

2011-국제-1393

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Indonesia |

2011. 12



## 머 리 글

본 책자는 지사가 진출하였거나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산업안전보건제도, 규정 및 규칙을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진출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책자 발간에 도움을 주신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MoMT, The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Buktirantau Bukti 노동의학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 주 요 내 용 |

### ▶ 산재발생시 신고절차, 관련 연락처 및 배부처, 신고양식 등재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시행규칙을 기재함으로써 산재 발생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재해보고서 작성양식
- 재해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 직업관련 질병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 화재/폭발/폐수처리 설비 위험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을 등재

### ▶ 강제 인증품목(45개품목에서 64개품목으로 확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SNI(국가규격)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통관자체가 되질 않고 폐기처리되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증처리절차, 인증기관, 강제 인증품목을 명시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100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잠재적인 고 위험을 가진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 및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시행규칙과 작성서류 준비, 점검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였음

### ▶ 보호구 착용 사업장 및 직업병 종류 명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할 사업장에 대한 내용과 인도네시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병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 노사분류, 최소임금제도, 아동법에 대한 형벌규정

기타 아시아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노사분류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과 최소임금제도, 아동법에 대한 준수 등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각 사업분야별 예시를 기재



# Contents

|                           |    |
|---------------------------|----|
| 1. 산업안전보건제도 .....         | 3  |
| 가. 산업재해 .....             | 8  |
| 나. 안전인증 · 검사제도 .....      | 11 |
|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제도 .....  | 16 |
| 라. 직업병 등 관련제도 .....       | 17 |
| 2. 기타관련제도 .....           | 19 |
| 가. 최소임금제도 .....           | 19 |
| 나. 노사분규현황 .....           | 21 |
| 다. 산업안전보건증진제도 .....       | 23 |
| 라. 벌금제도 .....             | 24 |
| 3. 일반사항 .....             | 29 |
| 가. 행정기관 연락처 .....         | 31 |
| 나. 웹사이트 주소록 .....         | 36 |
| 4. 기 타 .....              | 38 |
| 가.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       | 38 |
| 나. 인도네시아 경제현황 및 교역량 ..... | 39 |
| 다. 인도네시아 투자현황 .....       | 41 |

【붙임 1】 2003 인도네시아 노동법 관련 주요사항

【붙임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목차

【붙임 3】 재해보고서 작성양식

【붙임 3-1】 재해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붙임 3-2】 직업관련 질병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붙임 3-3】 화재/폭발/폐수처리 설비 위험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붙임 4】 인도네시아 SNI 통관강제 인증품목

【붙임 5】 보호구에 관한 인력 · 이주부 장관령

【붙임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인력 · 이주부 장관령

【붙임 7】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시 보상기준 비율(장애등급표)

【붙임 8】 신투자법 주요내용

【별 첨】 2010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보고 서한



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인도네시아편



1. 산업안전보건제도
2. 기타관련제도
3. 일반사항
4. 기 타







## 1 산업안전보건제도

### :: 인도네시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는 달리 근로자의 안전보호기준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에 관한 법률로는 1970년 제정된 작업안전법 제1호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법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법은 1999년 10월 3일 공포(1997년 법률 25호, 1998년 10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03년 3월 25일(법률 13호) 노동법을 개정하고 15개의 노동관련 법률을 폐지하였습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기보일러에 대한 안전은 1930년 작업안전법과 별도로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작업안전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작업안전법은 “생산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건강 및 안전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작업장이란 육상, 지하, 수면, 지하수, 대기에서의 모든 작업장을 의미하며 기획, 생산, 이송, 순환, 마케팅, 설치, 사용, 응용, 재료의유지 및 저장과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작업장과 건설, 가공 및 제조, 포장, 제품표시 등 모든 생산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감 독

이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검사(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xperts)를 수행

#### ■ 근로자 건강진단

1. 책임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건강, 정신상태 및 육체적 조건과 관



- 련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책임자는 근로자가 고용주 또는 임원에 의하여 지명된 내과의사에 의해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 ■ 교육 및 훈련

1. 책임자는 아래사항을 모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a.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상태
  - b.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모든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 c.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구
  - d.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 시스템
2. 책임자는 상기 조건을 이해시킨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3. 책임자는 응급구조를 이행하고 안전 및 보건증진, 화재진압, 사고예방에 대하여 훈련받은 근로자를 제공해야 한다.
4. 책임자는 사업과 작업장에서 강제로 수행하여야 할 규정 및 조건을 명령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 위원회

1. 인력 및 이주부 장관은(Minister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분야에서의 의무사항과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주, 근로자, 책임자가 차명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2. 안전보건위원회의 업무 등은 인력부에서 정한다.

## ■ 사고보고서

1. 인력 및 이주부에 등재된 책임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상기에서 정하는 사고보고서과 관련된 진행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 ■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

1. 안전검사자(Safety Inspector) 또는 안전전문가(Safety Expert)가 요청하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의무적인 보호구의 사용

3. 안전 및 보건상태의 이행
4.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상태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요구
5. 근로자의 책임한계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 보건 및 개인보호구와 관련되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반대의견

### ■ 작업장에 들어갈때의 의무

작업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의 이용과 모든 안전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책임자의 의무

#### 책임자는

- a. 작업장에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사본을 쉽게 볼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안전감독자 와 안전전문가의 지시하에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b.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전문가의 지시하에 책임자가 작업장에서 쉽게 볼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안전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사업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책임자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감독자 및 안전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지침서 및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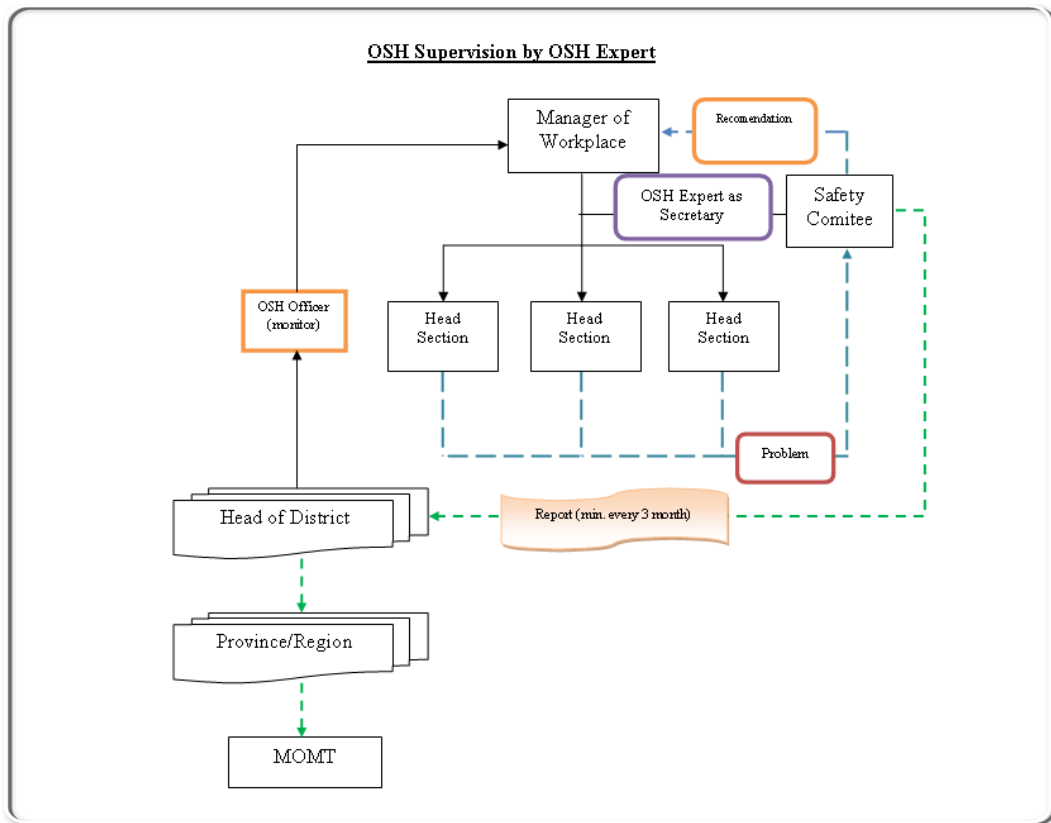
아울러 작업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위 규정명은 【붙임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까?

1987년에 인력부령으로 제정된 Regulation NO.4에 의거하여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모든 회사 또는 100명 미만이나 잠재적인 고 위험을 가진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장은 사업주이며 그 비서는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의 역할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고용인사이의 효율적인 참여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전문가는 각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을 감독하며 그 감독결과를 작업장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산업안전보건 향상여부는 산업안전보건 공무원에 의해 감독되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결과는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인력·이주부로 보고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의 감독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 및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3개월에 1회 규칙적인 회의를 갖고 산업안전보건 지방사무소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자료의 분석 및 수집
- ❖ 안전 및 보건작업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 ❖ 작업절차의 수정 및 평가
- ❖ 산업사고 및 질병원인에 대한 평가
- ❖ 산업, 보건, 인간공학 및 위생에 대한 연구

- ❖ 작업장치의 안전검사
- ❖ 감독 및 조언
- ❖ 건강 서비스 증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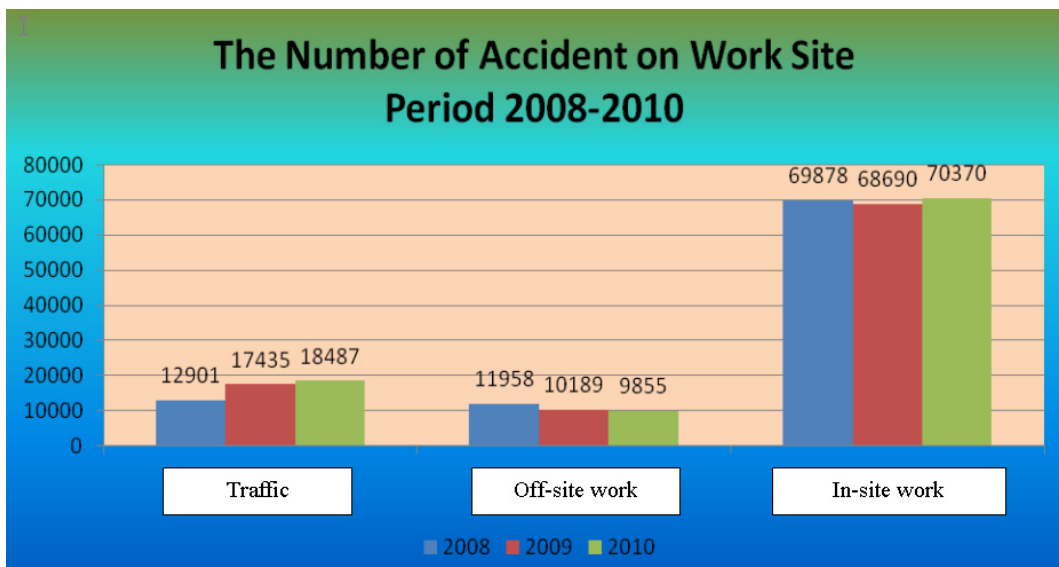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역별로 총 2,43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No. | Province           | Quantity Of OSH Committee |
|-----|--------------------|---------------------------|
| 1   | Jawa Tengah        | 673                       |
| 2   | Kalimantan Selatan | 511                       |
| 3   | Jawa Timur         | 392                       |
| 4   | Jawa Barat         | 228                       |
| 5   | D.I. Yogyakarta    | 109                       |
| 6   | Banten             | 73                        |
| 7   | Sumatera Utara     | 71                        |
| 8   | Riau               | 46                        |
| 9   | Sumatera Selatan   | 44                        |
| 10  | Sulawesi Selatan   | 40                        |
| 11  | NAD                | 36                        |
| 12  | Bangka Belitung    | 34                        |
| 13  | Bali               | 32                        |
| 14  | Sumatera Barat     | 28                        |
| 15  | Kalimantan Timur   | 24                        |
| 16  | Bengkulu           | 21                        |
| 17  | Lampung            | 18                        |
| 18  | Sulawesi Tengah    | 9                         |
| 19  | Kalimantan Selatan | 8                         |
| 20  | Jambi              | 8                         |
| 21  | Sulawesi Tenggara  | 6                         |
| 22  | Kalimantan Tengah  | 5                         |
| 23  | Sulawesi Barat     | 4                         |
| 24  | Maluku             | 4                         |
| 25  | Kalimantan Barat   | 3                         |
| 26  | Sulawesi Tenggara  | 2                         |
| 27  | Papua Barat        | 2                         |
|     | TOTAL              | 2,431                     |

## 가. 산업재해

### :: 인도네시아에서 산업재해는 얼마나 발생합니까?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산업안전보건 국가 프로파일에 따르면 년 간 재해 발생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08-2010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Traffic  | 12,901 | 17,435 | 18,487 |
| Off-Site | 11,958 | 10,189 | 9,855  |
| In-Site  | 69,878 | 68,690 | 70,370 |
| 재해자수(명)  | 94,737 | 96,314 | 98,7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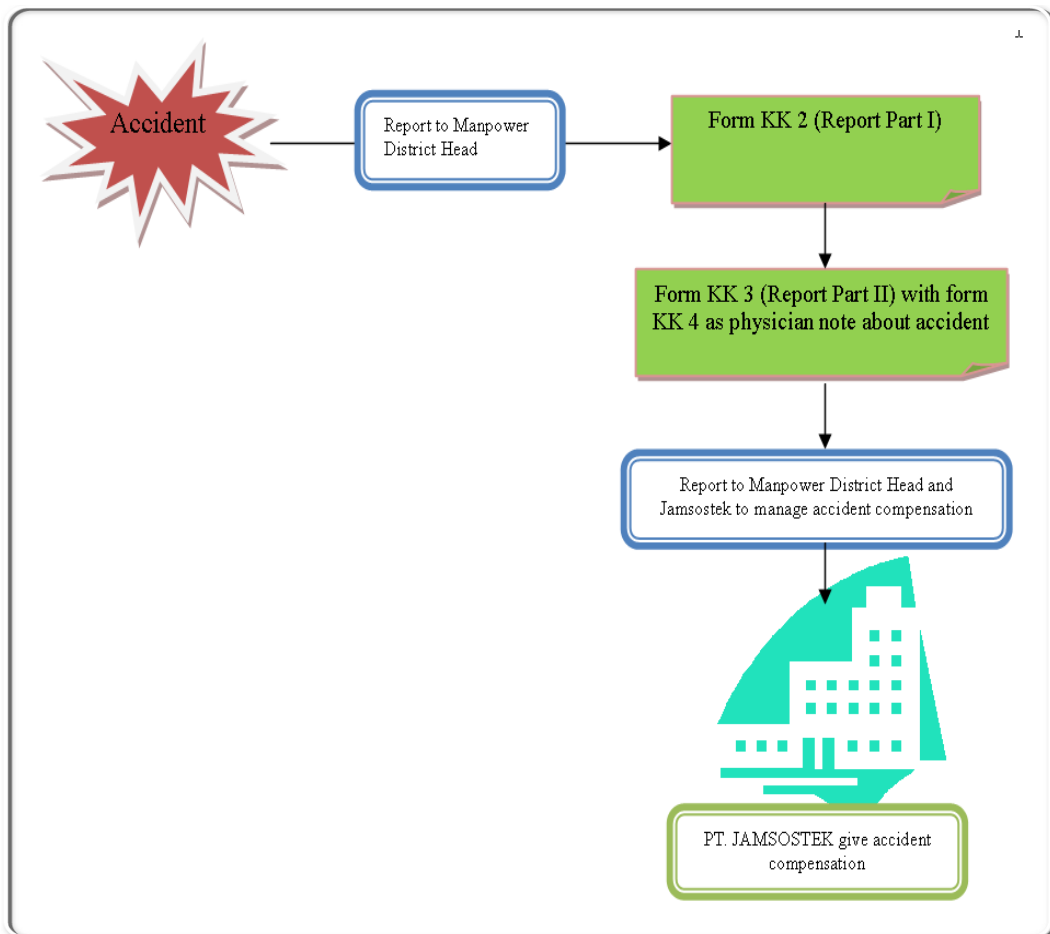
※ Source : 2010 National OSH Profile(인도네시아)

## ❧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고서를 7부(백색, 붉은색 핑크색, 노란색, 청색 등)를 작성하여 노란색은 회사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6부는 지방노동사무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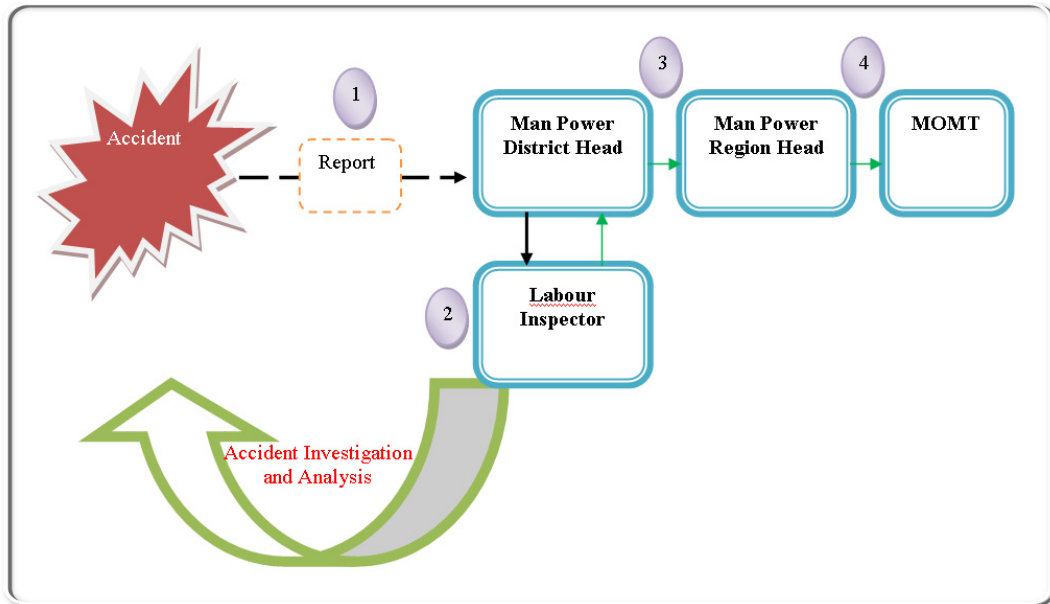
녹색과 청색은 JAMSOSTEK이라 불리는 근로자 권익보호기관으로 송부됩니다

###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절차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2 X 24시간내에 규정 03/Men/1998에 의거하여 사고 및 질병보고서(양식은 【붙임3】 참조)를 작성하여 지방 노동사무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보고 전에 구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 산업재해 신고절차 |



Regulation No. 03/MEN/1998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가 발생되면 바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를 위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제도가 있습니까?

Jamsostek에서 작업관련재해기금(JKK, Jaminan Kecelakaan Kerja)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위험형태에 따라 사업주는 월급여의 0.24%에서 1.74%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보험요율                    | 업종별 보험요율※             |
|-----------|-------------------------|-----------------------|
| 산재기금(JKK) | 월급여의 0.24 ~1.74% ※      | 1. 봉제업체 등 : 급여 0.24%  |
| 사망기금(JK)  | 월급여의 0.3%(회사)           | 2. 악기제조업등 : 급여0.54%   |
| 노후기금(JHT) | 월급여의 5.7%(회사 3.7%,개인2%) | 3. 목제업등 : 급여0.89%     |
| 건강기금(JPK) | 월급여의 3%(미혼자),6%(기혼자)    | 4. 차량조립업 등 : 급여 1.27% |
|           |                         | 5. 건설업 등 : 급여 1.74%   |



\* 이외 비정규직과 건설분야 근로자를 위하여 TKLHK(Tenaga Kerja Luar Hubungan Kerj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보상범위               |             | 금액                                       |
|--------------------|-------------|------------------------------------------|
| 산재로 인한<br>일시적 근로불가 | 1~4개월       | 월급여의 100%                                |
|                    | 5~8개월       | 월급여의 75%                                 |
|                    | 9~12개월      | 월급여의 50%                                 |
| 신체장애               | 신체일부의 영구적장애 | 일시급 : 장애급여기준비율 x 80월                     |
|                    | 신체의 영구적 장애  | 일시급 : 월급여의 70% x 80월                     |
|                    | 기능장애        | 일시급 :<br>기능장애정도x장애급기준비율 x 70월            |
| 사망                 |             | 일시급 : 월 급여의 60% x 80월<br>장례비용 : 200만 루피아 |
| 기타                 | 치료비         | 최대 1200만 루피아                             |
|                    | 재활비         | 최대 200만 루피아                              |
|                    | 응급수송비       | 최대 150만 루피아                              |

※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시 보상기준비율(장애급여표)는 【붙임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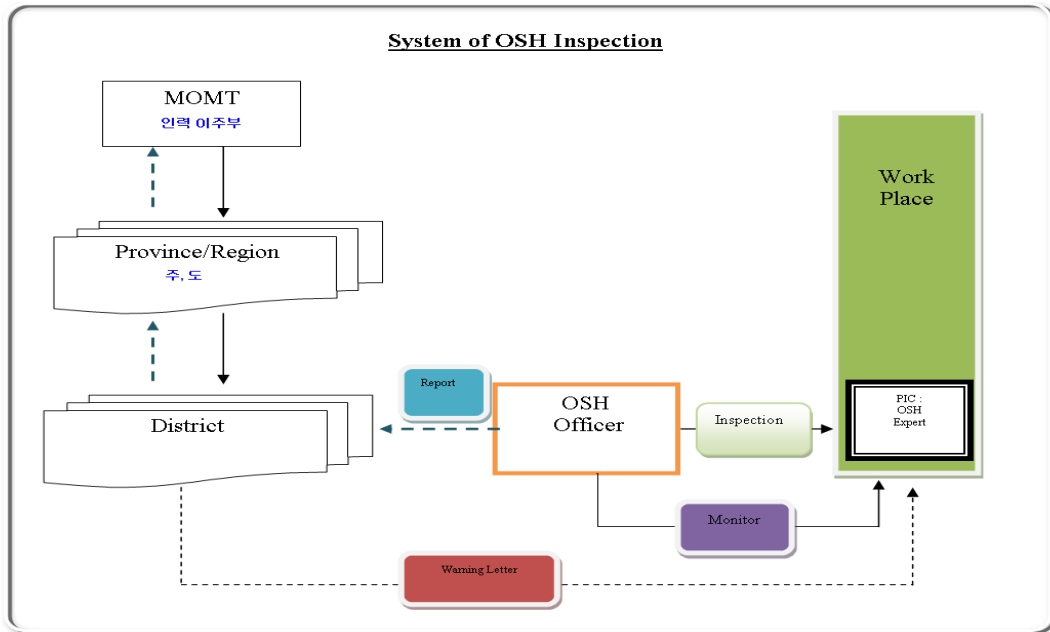
## 나. 안전인증 · 검사제도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품을 포함하여 허가,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검사는 각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보건 공무원에 의해 수행하며 진단 및 측정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승인받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회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검사결과서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고용주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공무원은 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산업안전보건검사 결과는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력·이주부로 보고됩니다.

## | 검사 절차 |



###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품을 포함하여 허가,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관리기관은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관강제인증품에 대해서는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이 있으며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물품을 폐기처리하거나 재 수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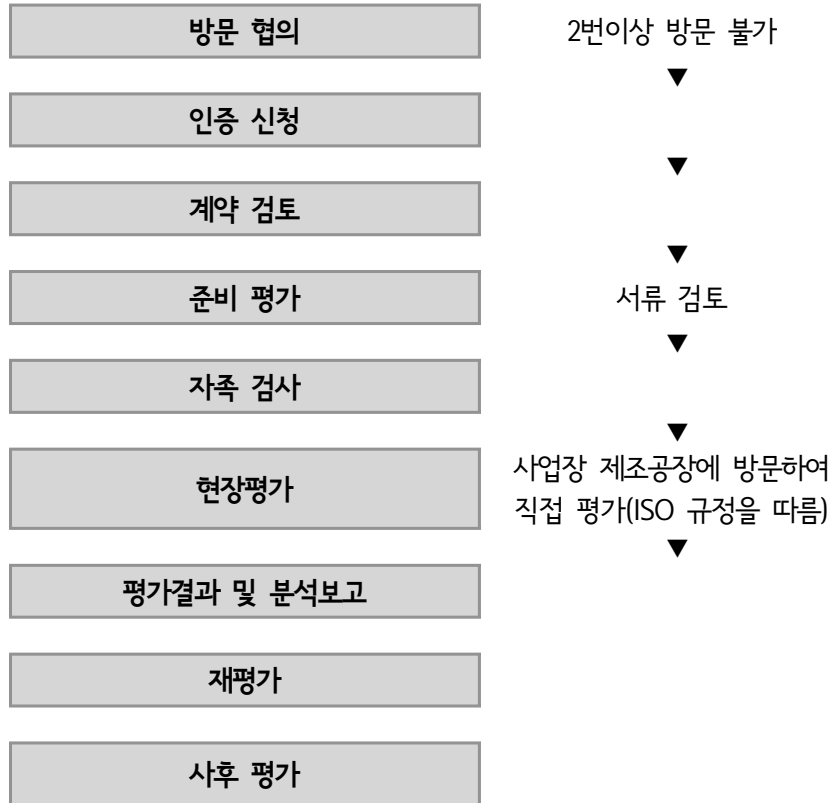
2010년 열연재강판 및 갈바늄 철판의 경우 SNI 규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도록 통관강제인증품에 추가하는 시행령을 산업부장관령으로 발표하였으며 SNI 인증은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약 3일간 3명파견)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수수료는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NI 강제인증품은 45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64개의 HS코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제인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SNI인증을 받는 경우 판매 및 통관이 수월합니다. 또한 제품이 이미 ISO표준이 있고 ISO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SNI인증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SNI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품은 【붙임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WTO-TBT 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SNI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사항은 웹사이트 <http://sisni.bsn.go.i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NI 표준규격에 따른 제품 인증절차 |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형식 승인, 수입허가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 화학제품 수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
- 중고 기계 수입시는 실 수요자 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선적 전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 섬유를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시 선적전 검사
- 세라믹 제품시 선적전 검사 및 수입관세는 물류 종량세 별도 납부
- 통신제품 수입시는 통신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등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Ministry of Trade)는 “제품라벨 강제규정”과 관련된 법령





(62/M-DAG/ PER/ 12/ 2009)를 2010년 9월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 1 :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46개 대분류)
- 분류 2 : 건설자재(총 9개 대분류)
- 분류 3 : 자동차 부품등(총 24개 대분류)
- 분류 4 :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

상기 라벨규정을 어긴업체는 무역면허 또는 기타 면허를 취소시키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인도네시아 사업장 규정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호구에 대해서는 장관부령 PER08/MEN/VII/2010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정의와 관리 감독자, 고용주,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종류가 명시되어 있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장 정의

1. “개인보호장치(약칭 PPD, 인도네시아어 APD)”란 작업현장에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하기위한 기능으로써 보호성능을 가진 장치

- 2장 (1) 기업주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PPD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2) PPD는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 또는 적용가능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3장 (1) 2장에서 명시하는 PPD는 다음과 같다

- a. 머리 보호구
- b. 눈 및 안면 보호구
- c. 방음 보호구
- d. 호흡 보호구 및 부속품
- e. 손 보호구
- f. 발 보호구

- (2) (1)에서 명시된 것 이외 아래도 포함된다
- a. 보호복



b. 개인 추락방지 보호구

c. 부유물

(3) (1) 및 (2)에 명시된 PPD의 형태와 기능은 장관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4장** PPD는 다음 작업장소에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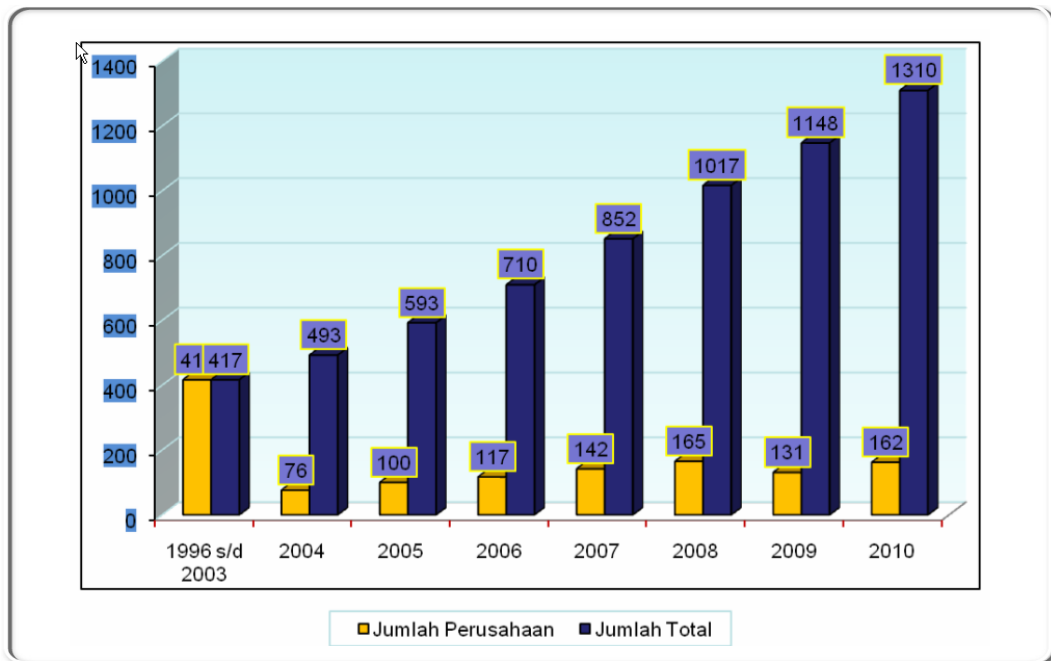
- a. 엔진, 비행기 또는 공구등을 제조, 시험 또는 사용하거나 사고, 화재 또는 폭발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장소
- b. 가연성, 폭발, 부식, 독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품목을 고온 또는 저온에서 제조, 가공, 사용, 운송, 무역, 저장하는 경우
- c. 지하터널, 하수시설, 관개시설을 포함한 집, 건물 또는 다른 건축물을 짓거나, 변경하거나. 유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부수거나 만드는 곳
- d. 농장, 조림지, 숲에 통로개설, 숲제거, 목가공 또는 숲과 관련된 제품, 동물농장, 낚시와 관련된 가공을 하는 장소 및 헬쓰장 운영 장소
- e. 광산, 석가공, 가스, 오일, 지열 또는 미네랄등 땅 내부 또는 표면에서 및 물아래에서 운영되는 장소
- f. 품목, 동물 또는 인간을 땅에서 운송하거나 터널을 통하거나 물 위 또는 물 아래 또는 대기중에 운반하는 장소
- g. 화물을 배, 요트, 항구, 독크, 역, 공항 또는 저장창고에서 올리거나 하역하는 장소
- h. 다이빙, 생명보호장치 또는 잠수상태에서의 작업
- i. 지면 또는 수면위의 높은 장소에 행하는 작업
- j. 고온, 저온 또는 대기압아래에서 행하는 작업
- k. 미끄러짐, 넘어짐, 크게넘어짐, 붕괴, 익사, 또는 걸려넘어짐 등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서 행하는 작업
- l. 작은 방, 탱크, 우물 또는 구멍에서 행하는 작업
- m. 온도변화가 심한곳, 습기, 먼지, 지꺼기, 화재, 연기, 기체, 바람, 극심한 기후, 방사선, 광선, 소음 및 진동이 있는 장소
- n.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파괴하는 곳
- o. 라디오 주파수, 레이다. TV 또는 전화주파수를 널리 전파하거나 수발신하는 곳
- p. 기술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가르키거나 시험하거나 조사하는 곳
- q. 전기, 가스, 오일 및 물을 생산, 변화, 축적, 저장, 분배 또는 전달하는 곳
- r. 전기 또는 기계 설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재창조적인 활동을 행하는 곳

## 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 ❖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의무사항입니까?

노동이주부 장관 시행령 PER-05/MEN/1996 제3조에 의해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폭발, 화재, 오염 및 질병등과 같은 재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자재 특성상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모든 회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업장 현황 및 추이 |



인력·이주부 장관시행령 제PER-05/MEN/1996호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행 수준은 다음 3가지 수준으로 분류 됩니다.

- 위험수준이 낮은 소규모 업종 또는 회사에서는 64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위험수준이 중간급인 중규모업종 또는 회사에서는 122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위험수준이 매우 높은 대규모업종 또는 회사에서는 166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작업장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달성도는 다음 세부기준에 따라 측정됩니다.

- 달성 수준 : 미이행 및 0-59 % 달성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 b. 달성 수준: 60-84 % 달성자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은 실버 배너가 수여됨  
 c. 달성수준: 85-100 % 달성자에 대해서는 골드 배너가 수여됨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메달 및 배지 형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련 시행령은 【붙임 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직업병

❖ 인도네시아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병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노동이주부(The Minister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규정 (regulation)번호 PER-01/MEN/1981에 따르면 “직업병이란 산업 또는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직업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후 2 X 24hr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경화성 광물분진에 의한 폐질환(규폐증, 탄규폐증, 석면폐증)과 규폐증의 원인으로 불능 또는 죽음을 초래하는 규소폐결핵증
2. 고체 금속먼지에 의해 발병하는 폐 및 호흡기 질환(기관지폐구역)
3. 충진제, 섬유, 마 등 분진에 의해 일으키는(기관지폐구역) 폐 및 호흡기 질환

4. 작업공정에 존재하거나 이미 알려진 성분으로 민감성 및 자극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천식
5. 호흡성 유기분진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알러지성 폐포염
6. 베릴륨 또는 베릴륨 독성 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7. 카드뮴 또는 카드뮴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8. 인 또는 인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9. 크롬 또는 크롬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0. 망간 또는 크롬 망간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1. 비소 또는 비소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2. 수은 또는 수은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3. 납 또는 납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4. 밀가루 또는 밀가루 독성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5. 탄소 이황화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6. 지방족 시리드의 탄소화물인 독성 할로젠 유도체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7. 벤젠 또는 벤젠 동족체에 의해서 일으키는 질병
18. 니트로 및 아미 독성 유도체 또는 니트로 및 아미 독성 유도체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19. 니트로 글리세린 또는 니트레이트 산의 나머지 화합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20. 알코올, 글리콜 또는 코튼에 의해 일으키는 질병
21. 일산화탄소, 시안화 수소 또는 황화수소의 독성 유도체와 같이 기절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물질의 스팀 또는 가스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
22.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23. 근육, 근육근, 뼈, 조인트, 지혈관 또는 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기계적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24. 고기압의 장소에서의 작업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25. 전리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26. 다른 직업병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질환
27. 타르, 송진, 역청(아스팔트), 광물 오일, 안트라센 또는 이러한 물질의 잔여물, 제품 또는 성분에 의해 일으키는 제1차 피부 상피종증
28. 석면에 의해 일으키는 폐암 또는 중피종
29. 특수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또는 기생 질병
30. 비정상적인 습도, 방사열, 고온 또는 저온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 자료원 : ILO Asian-Pacific Regional Network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Asia-OSH)



## 2 기타관련제도

### 가. 최소임금제도

#### ::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임금제도가 있습니까?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서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제도는 주 단위 및 시,군 단위로 결정되므로 전국단위의 통일적인 최저임금은 없으며 통계목적에 위해 주별 최저임금을 평균하여 전국 최저임금 수준을 산출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등을 감안하여 시, 도 주지사가 결정하되 최근 및 연간 매년 10% 내외의 최저임금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최소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은 【별첨】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서한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근 증가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인도네시아 지역별 월최저임금 및 증가율 추이 |

(단위 : 달러)

| No | 지역명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1  | Nanggroe Aceh Darussalam | 92.1 | 95.5  | 112.4 | 134.8 | 146.1 | 151.7 |
| 2  | North Sumatera           | 82.9 | 85.5  | 92.4  | 101.7 | 108.4 | 116.3 |
| 3  | West Sumatera            | 73.0 | 81.5  | 89.9  | 98.9  | 106.7 | 118.5 |
| 4  | Riau                     | 71.6 | 79.8  | 89.9  | 101.3 | 114.2 | 125.8 |
| 5  | Riau Islands             | 85.4 | 90.4  | 93.6  | 100.2 | 103.9 | 109.6 |
| 6  | Jambi                    | 63.3 | 73.9  | 81.3  | 89.9  | 101.1 | 115.5 |
| 7  | South Sumatera           | 67.9 | 84.6  | 83.5  | 92.7  | 104.2 | 117.8 |
| 8  | Bangka Belitung Islands  | 71.9 | 80.9  | 91.3  | 95.5  | 102.2 | 115.1 |
| 9  | Bengkulu                 | 58.0 | 72.5  | 77.5  | 82.6  | 87.6  | 91.6  |
| 10 | Lampung                  | 56.7 | 62.4  | 69.3  | 77.6  | 86.2  | 96.1  |
| 11 | DKI Jakarta              | 92.0 | 101.2 | 109.3 | 120.2 | 125.6 | 144.9 |
| 12 | Banten                   | 74.3 | 83.9  | 94.0  | 103.1 | 107.3 | 112.4 |
| 13 | West Java                | 50.3 | 58.1  | 63.8  | 70.6  | 75.4  | 82.2  |
| 14 | Central Java             | 50.6 | 56.2  | 61.5  | 64.6  | 74.2  | 75.8  |
| 15 | D. I. Yogyakarta         | 51.7 | 56.2  | 65.8  | 78.7  | 83.8  | 9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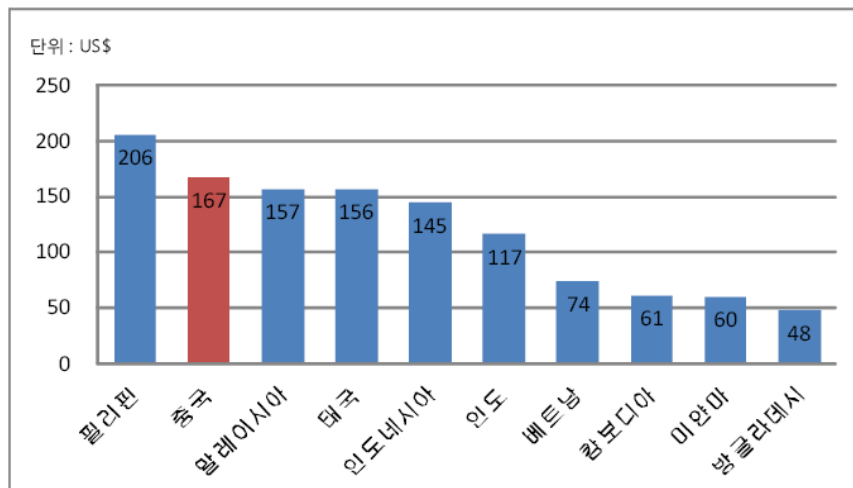


|    |                     |      |       |       |       |       |       |
|----|---------------------|------|-------|-------|-------|-------|-------|
| 16 | East Java           | 43.8 | 50.4  | 56.2  | 64.0  | 70.8  | 79.2  |
| 17 | Bali                | 57.3 | 69.9  | 76.7  | 85.4  | 93.2  | 100.0 |
| 18 | West Nusa Tenggara  | 61.8 | 72.5  | 82.0  | 93.5  | 100.1 | 106.7 |
| 19 | East Nusa Tenggara  | 61.8 | 67.4  | 73.0  | 81.5  | 89.9  | 95.5  |
| 20 | West Kalimantan     | 57.5 | 62.9  | 72.5  | 79.2  | 83.3  | 90.2  |
| 21 | South Kalimantan    | 70.7 | 83.7  | 92.7  | 104.5 | 115.1 | 126.5 |
| 22 | Central Kalimantan  | 71.3 | 74.8  | 86.1  | 98.1  | 110.8 | 127.5 |
| 23 | East Kalimantan     | 76.9 | 86.1  | 100.0 | 107.3 | 112.6 | 121.8 |
| 24 | South Sulawesi      | 68.8 | 75.5  | 83.2  | 101.7 | 112.4 | 123.6 |
| 25 | South-East Sulawesi | 64.4 | 71.9  | 78.7  | 86.5  | 96.6  | 104.5 |
| 26 | Central Sulawesi    | 64.6 | 69.1  | 75.3  | 80.9  | 87.4  | 93.0  |
| 27 | West Sulawesi       | -    | -     | 85.4  | 102.2 | 106.1 | 113.0 |
| 28 | North Sulawesi      | 80.2 | 84.3  | 94.9  | 104.4 | 111.2 | 121.3 |
| 29 | Gorontalo           | 59.2 | 62.9  | 67.4  | 75.8  | 79.8  | 85.7  |
| 30 | Maluku              | 64.6 | 71.3  | 78.7  | 87.1  | 94.4  | 101.1 |
| 31 | North Maluku        | 59.3 | 74.2  | 78.7  | 86.5  | -     | 0.0   |
| 32 | Papua               | 92.4 | 110.9 | 124.2 | 136.6 | 147.9 | 157.6 |
| 33 | West Papua          | -    | -     | 124.2 | 132.6 | 136.0 | 158.4 |

주: 달러임금은 1만 루피아를 0.89 달러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노동부 산업개발 및 노동자 보험관리국

2011년도 동서남아 주요국의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중간정도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자료원 : 각국 노동부, KOTRA 해외KBC 자체조사

\* 주 : 미얀마, 말레이시아 최저임금 규정이 없어 생산직(비숙련) 최저임금으로 추정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은 2009년도 말레이시아 고용주 연합에서 발표한 것이나 최근 임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나. 노사분규현황

### ❖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떠합니까?

2000년도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찾아오면서 노사분규가 줄었다고는 하나 예전에는 단순히 임금수준의 노사분규에서 최근에는 복잡한 양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발생한 파업을 검토해 보면 과거 파업의 주요 요인이었던 최저 임금 준수보다는 다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다 양해지고 있는데, 주로 단체협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았으며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사측의 변경 시도를 철회시키기 위한 목적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인상과 체불, 임금체계 변경, 상여금 그리고 노조 결성과 관련한 전통적 이유로 파업이 발생했으며, 과거와 달리 계약직의 정규 직 전환 요구도 파업요인이 되었고 파업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파업의 주요 업종이었던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파업이 확산돼 공항, 항만, 병원, 공공운송 등 과거에는 파업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던 공공부문에서도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노동쟁의 건수 및 현황 |

| 연도         | 노동쟁의 건수 | 참가 노동자 수 | 손실 근로시간   |
|------------|---------|----------|-----------|
| 2006       | 282     | 595,783  | 4,665,685 |
| 2007       | 147     | 135,297  | 1,161,459 |
| 2008       | 146     | 211,504  | 1,546,400 |
| 2009       | 207     | N/A      | N/A       |
| 2010(5월까지) | 50      | N/A      | N/A       |

※ 자료원 : 동·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방향  
(Global Business Report11-010, 2011.04.05)

아래 표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파업의 방식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생산정지를 목표로 하는 전면적 파업뿐만 아니라 적게는 몇 시간에서 많게는 며



칠 동안 지속되는 부분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파업을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해 파업을 선언한 후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주요 노동쟁의 현황 |

| 분야        | 주요이슈    | 전개과정                                | 결과                      |
|-----------|---------|-------------------------------------|-------------------------|
| 섬유        | 임금체불    | 일용직 3.5개월, 정규직 2.5개월 임금체불           | 지역노동사무소에 문제 제기후 임금지불    |
| 목재        | 임금체불    | 사측과 협의 후 이행되지 않아 파업                 |                         |
| 버스        | 정규직전환   | 버스표판매원 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                         |
| 철도        | 정규직전환   | 5년이상 표 판매원 정규직 전환 요구                |                         |
| 해상운송      | 단체협약 이행 | 단체협약 미이행 및 개별계약 요구 시 파업             | 노조원 40명 해고              |
| 봉제        | 노조결성    | 회사 노조결성 거부 이에 쟁의 돌입                 | 노조결성참여자 해고              |
| 공항관리      | 단체협약 이행 | 퇴직금과 관련된 단체협약 미이행 5개 공항에서 파업        | 노조간부 해고                 |
| 의류        | 임금체계 변경 | 성과급 지급을 57%감소 파업                    | 파업노동자 800여명 계약직 전환      |
| 타이어       | 상여금     | 생산성향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을 215%에서 450%로 인상요구 |                         |
| 중장비       | 임금인상    | 쟁의발생신고 노동부 미인정, 바로 파업돌입             | 주동자해고 파업참여자 경고          |
| 의류섬유      | 상여금     | 금식월이후 보너스관련으로 파업                    | 시위참여노동자해고 기타노동자 경고      |
| 새우양식 및 가공 | 연금분담금   | 퇴직금과 관련된 분담금 회사와 마찰, 쟁의             | 노조관계자 체포 쟁의노동자 400여명 해고 |
| 기타        | 노조      | 사측 노조 불인정 해고자 복직요구 시위               | 시위노동자 해고 참여자 경고         |

※ 자료원 : KOLIF 국가별 노동정보(2009.12.01)



## 다. 산업안전보건 증진제도

❖ 인도네시아에도 국내 무재해운동처럼 산업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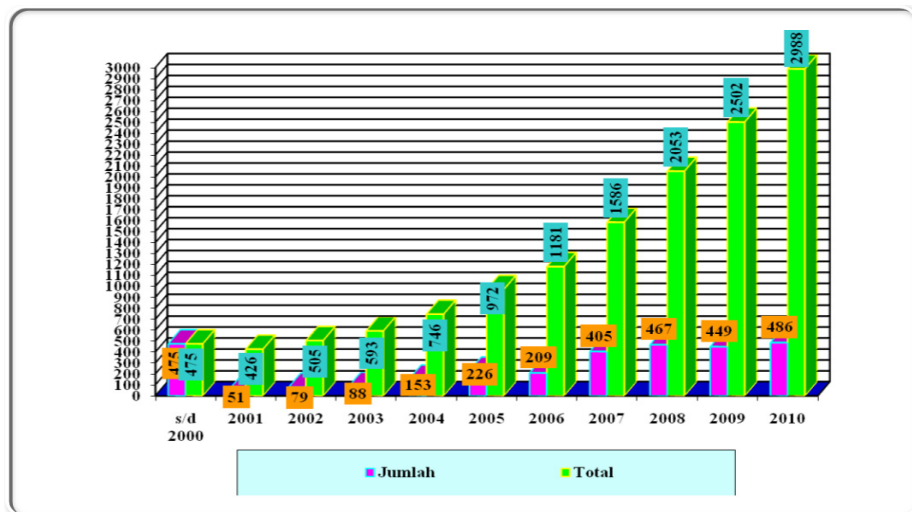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etem Award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상)
2. Zero Accident Award(무재해 수상)
3. OSH Motivator
4. OSH Builder

상기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받는 기업체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상을 수여받습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OSH 인증서 및 깃발
2. 무재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OSH 현장 및 플래카드
3. 무재해 운동 최우수사례에 대한 트로피
4. OSH Motivator에 대한 메달 및 बै지
5. OSH Builder에 대한 OSH현장 및 플래카드

| 무재해 수상 사업장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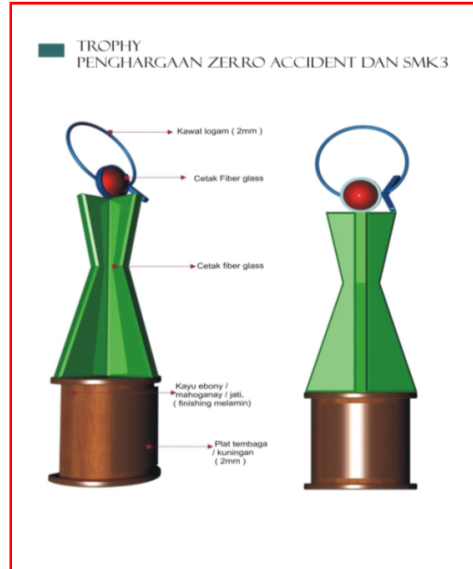


## | 무재해운동 |

### 무재해운동 플래카드 형태



### 무재해운동 최우수상 트로피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증진제도는 기업체간 명예를 촉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금전적인 혜택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혜택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라. 벌금제도

### ⚡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2003년 노동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아동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최소 2년,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최소 200,000,000루피 혹은 최대 500,000,000 루피 벌금형에 처한다.

이외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관련하여 법에 노동법 제185조에 의하면 “재판에 의하여 산재결정이 되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160조 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며 위반시 최소 1년 최대 4년 징역형 혹은 최소

100,000,000루피 최대 4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0조〉 1항 근로자 부양가족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 a. 1명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의 25%
- b. 2명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의 35%
- c. 3명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의 45%
- d. 4명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의 50%

2항 1항에 언급된 지원은 달력일수로 6개월간 지불해야 한다.

4항 기업주는 6개월이 경과된 그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외 노동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185조

- (1) 42조 1·2항(외국인 근로자), 68조(아동고용금지), 69조 2항(경작업에 대한 아동 고용), 80항(근로자에 종교적 수행 제공), 82항(여성근로자 출산휴가), 90조 1항(최소 임금 위반), 139조(복지관련), 143조(노동조합), 160조 4·7(법에 의해 산재결정이 난 경우 그 가족의 생활유지비 지급)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1년 최대 4년 징역형 혹은 최소 100,000,000루피 최대 4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 186조

- (1) 35조 2·3항(인력채용), 93조 2항(임금 미지불), 137조(협상 실패로 파업이 발생한 경우), 138조 1항(노조가 법 위반없이 관련 근로자 참여를 요구하였을 때)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1개월 최대 4년의 징역 혹은 최소 10,000,000루피 최대 4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 87조

- (1) 37조 2항(근무대체), 44조 1항(외국인 근로자), 45조 1항(외국인근로자의 의무), 67조 1항(장애자 고용), 71조 2항(아동고용), 76조(18세이하 여성근로자 고용), 78조 2항(초과수당), 79조 1·2항(근로자 휴가), 85조 3항(공휴일에 대한 초과수당), 144조



(파업시 사업주가 금해야 하는 것)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 혹은 최소 10,000,000 최대 1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 188조

(1) 14조 2항(사립 직원훈련원), 38조 2항(사립 직원훈련원), 63조 1항(구두 업무협약), 78조 1항(최대 근무시간), 108조 1항(10인 이상 채용 사업주는 회사규정을 설정하여야함), 111조 3항(2년마다 회사규정 갱신), 114조(회사규정에 대한 직원 통지), 14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5,000,000 최대 50,000,000 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 189조

제재는 기업가가 감옥에 가는 형태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은 근로자의 보상에 대한 기업가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인도네시아에는 34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 384명의 노동감독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사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체의 내용 및 건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 NO | PROVINCE            | LABOUR INSPECTOR |            |      | Quantity |
|----|---------------------|------------------|------------|------|----------|
|    |                     | GENERAL          | SPECIALIST | PPNS |          |
| 1  | DKI Jakarta         | 69               | 10         | 40   | 119      |
| 2  | Jawa Barat          | 166              | 25         | 40   | 231      |
| 3  | Jawa Tengah         | 152              | 33         | 73   | 258      |
| 4  | Yogyakarta          | 16               | 7          | 10   | 33       |
| 5  | Jawa Timur          | 148              | 61         | 71   | 280      |
| 6  | B A L I             | 18               | 10         | 5    | 33       |
| 7  | B A N T E N         | 25               | 11         | 7    | 43       |
| 8  | Nusa Tenggara Barat | 10               | -          | 5    | 15       |
| 9  | Nusa Tenggara Timur | 17               | 1          | 14   | 32       |
| 10 | D.I. Aceh           | 23               | -          | 5    |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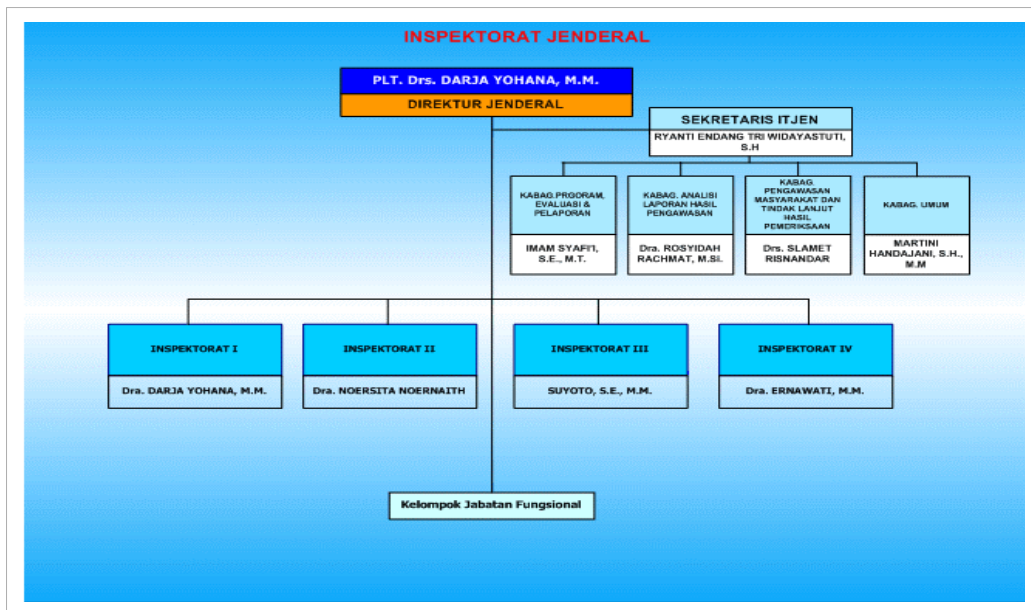


| NO | PROVINCE            | LABOUR INSPECTOR |            |      | Quantity |
|----|---------------------|------------------|------------|------|----------|
|    |                     | GENERAL          | SPECIALIST | PPNS |          |
| 11 | Sumatera Barat      | 30               | 7          | 11   | 48       |
| 12 | Sumatera Utara      | 106              | 11         | 30   | 147      |
| 13 | R I A U             | 40               | 6          | 16   | 62       |
| 14 | Kepulauan Riau      | 23               | 3          | 8    | 34       |
| 15 | J A M B I           | 19               | 6          | 7    | 32       |
| 16 | Bengkulu            | 16               | 5          | 3    | 24       |
| 17 | Kepulauan Babel     | 9                | 5          | 4    | 18       |
| 18 | Sumatera Selatan    | 41               | 9          | 18   | 68       |
| 19 | Lampung             | 41               | 3          | 11   | 55       |
| 20 | Kalimantan Timur    | 55               | 58         | 59   | 172      |
| 21 | Kalimantan Selatan  | 17               | 25         | 8    | 50       |
| 22 | Kalimantan Barat    | 20               | 2          | 10   | 32       |
| 23 | Kalimantan Tengah   | 27               | 2          | 6    | 35       |
| 24 | Sulawesi Utara      | 19               | 6          | 13   | 38       |
| 25 | Gorontalo           | 8                | 4          | 3    | 15       |
| 26 | Sulawesi Tengah     | 23               | 2          | 5    | 30       |
| 27 | Sulawesi Tenggara   | 34               | 2          | 12   | 48       |
| 28 | Sulawesi Barat      | 9                | 1          | 1    | 11       |
| 29 | Sulawesi Selatan    | 96               | 29         | 32   | 157      |
| 30 | M A L U K U         | 20               | 5          | 7    | 32       |
| 31 | Maluku Utara        | 5                | -          | 4    | 9        |
| 32 | Papua Barat         | 7                | -          | 4    | 11       |
| 33 | P A P U A           | 14               | 2          | 3    | 19       |
| 34 | Ditjen. Binwasnaker | 137              | 10         | 18   | 165      |
|    | TOTAL               | 1460             | 361        | 563  | 2384     |

## ⚙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정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 현장에서 감독합니까?

인도네시아는 인력 및 이주부에 노동감독청이 있으며 주마다 노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동감독청의 주요업무는

- 기능 검사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준비
- 성능, 재무 및 인력과 이주부 장관의 방향에 따라 특별 검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 공공 행정을 수행하고, 노동 검사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하며 이에 대한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3 일반사항

####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 설립 시 저촉되는 노동법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 설립 시 주의하여야 할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법(2000년 No.21); Trade Union Act 2000, No. 21

－ 주요 내용 :

- 5조(2항) 최소 10명의 노동자에 의해 (사업장) 노동조합 설립가능.
- 6조(2항) 최소 5개의 (사업장) 노동조합에 의해 노동조합연합(federasi) 설립 가능.
- 7조(2항) 최소 3개의 노동조합연합에 의해 전국노동조합연합체(konfederasi) 설립 가능.

● 근로기준법(2003년 No.13); Manpower Act 2003, No.13

● 노사분규조정법(2004년 No.2); Labor Dispute Settlement Act 2004, No.2

- － 노사분쟁을 1)권리분쟁, 2)이권분쟁, 3)고용관계 종결 관련 분쟁, 4) 회사 내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의 4가지로 구분.
- － 일차적으로 무사와라 방식의 노사 양자간 교섭을 최대 30일 간 진행 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노동관련기관에 보고 후, 7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2가지 분쟁 해결 방식(중재와 화해) 중 택일하거나, 노동관련 기관의 조정 요청.
- － 중재자의 개입 이후에도 미해결될 경우 노동법원에 심판 청구가능. 분쟁의 내용이 취업 및 해고일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이익의 충돌 혹은 노조 내 분쟁일 경우에는 불가함.

● 높은 실질 실업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히 규정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해고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생산 감축이 필요하거나 노동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노동부의 허가 없이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 (3회 이상의 경고조치 필요)할 수 없음.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주 6일 근로 시 7시간, 5일 근로 시 8시간을 법정 근무시간으로 정함.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개의 총 연맹과 90개의 연맹, 11,786개의 단위노조 및 146개의 전국단위 공공노동 조합등 약 340만명의 정부 공식 등록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1998년 ILO 87호 협약의 비준으로 노동조합 조직 결성의 자유가 확보되자, 정부의 유일한 노동조합 총연합체(SPSI)에서 분리,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 총 연합체들이 생겨남. 1998년에 유일한 총연합체였던 SPSI는 FSPSI(2002년 KSPSI로 개칭)와 FSPSI-Reformation으로 분리된 후, 2001년에 FSPSI-Reformation에서 다시 1개 연맹만 잔류한 채 11개의 연맹이 분리해 나와서 CITU(KSPI)를 조직하여 결과적으로 세 개의 조직으로 나뉘지게 됨. 이와는 별도로 팍파한이 주도한 SBSI(번영노조;KSBSI)와 지역단위의 투쟁체적인 조직형태를 띤 FNPBI 조직 등 군소 노동조합 연합체가 다수 있음.

인도네시아의 총 연맹은 다음과 같습니다.

- **KSPSI** : 이전 명칭인 SPSI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총연맹을 의미하는 K가 앞에 추가됨. 정식명칭은 Confederation of All Indonesian Trade Unions임. 17개 산별회원조합, 자체집계 조합원 수는 460만 명으로 주장하나, 1998년 이후 독립하는 단체가 생기면서 조합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독립성 여부에 대한 문제로 국제노총(ITUC)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음.
- **KSPI** : 1998년 KSPSI로부터 독립하였으며, 2003년 11개 전국단위 산별연맹체의 통합으로 설립됨. 정식명칭은 Confederation of Indonesian Trade Union (CITU;KSPI)임. 국제노총(ITUC)에 가입, 회원수는 506,236명(2009.9월 기준). 조합원의 70%가 기업단위에서 조직되고, 30% 정도가 지역단위와 연맹단위로 조직되어 조합원의 60~70%가 체크오프시스템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어서, 지역단위로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KSBSI** : 과거에는 SBSI로 알려진 단체로, 총연맹을 의미하는 K가 앞에 추가됨. 정식명칭은 Konfederasi Serikat Buruh Sejahtera Indonesia(Prosperity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Indonesian)임. 국제노총(ITUC)에 가입, 회원수는 511,000명(2009.9월 기준).



- 1992년 설립. 설립초기부터 강력한 탄압을 받음.
- 설립초기 2년간 노조간부 3명 사망, 250명 구속, 2,500명 정리해고 등 극심한 탄압을 경험.
- 1994년 2월 고용법 시행을 위해 총파업 진행, 관철시킴.
- 1994년 9월 당시 위원장이던 묵타르 팍파한(Muchtar Pakpahan)이 4월, 6월에 있었던 메단(Medan)지역 폭동의 배후로 구속됨. 그 이후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게 되고 1997년 WCL 세계노련과 ICFTU 국제자유노련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비난하며 SBSI 인정을 요구.
- 1998년 대선을 앞두고 탄압은 정점에 달해 SBSI 자카르타 본부는 경찰에 의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봉쇄됨.
-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사임하고 무크타르 파크파한은 석방되었으며 SBSI도 합법화 됨.
- SBSI는 한국기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땅에랑 공단(Tangerang)에 주요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대형 노사분규를 일으켜 국민적 관심유발과 세력 강화를 꾀하였음.
- 지금은 합법적인 조직으로 정부의 삼자기구회의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고, 현 위원장 Rekson Silaban은 국제노총(ITUC)의 집행위원과 ILO의 부이사(deputy)직을 겸하고 있음.

## 가. 행정기관 연락처

###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 인력 및 이주부는 아래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ecretariate General

인력과 이주부의 모든 기술적 이행사항에 대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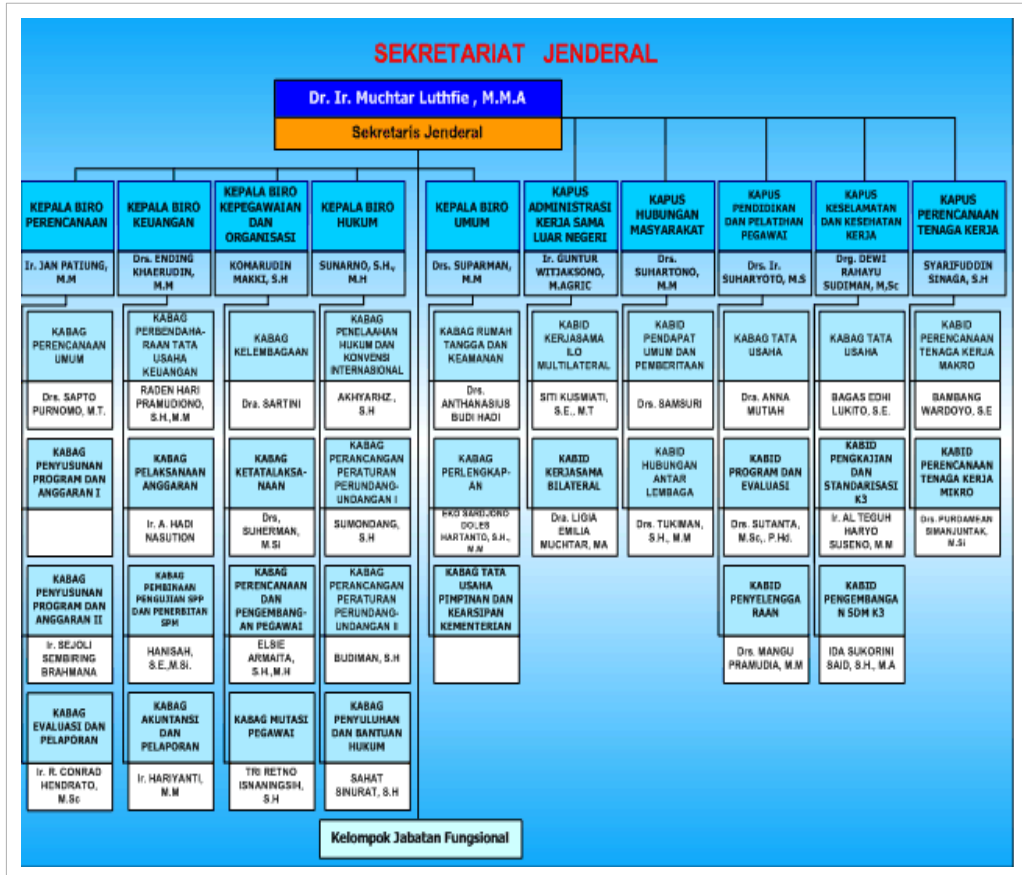
행정 관리를 수행; 행정사무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촉진시키고, 국가 다른부처, 관련 비정부 및 기타기관, 장관지시에 따른 작업과 업무를 수행

- Inspectorate General(감독청) : 상기 설명 참조

- Research, Development, Information department



인력 및 이주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력 및 이주부의 운영, 정책 반영, 내부간 행정문제 조정 이외 사회보장부, 인력 및 생산부,



## ● 인증제도 관리기관(B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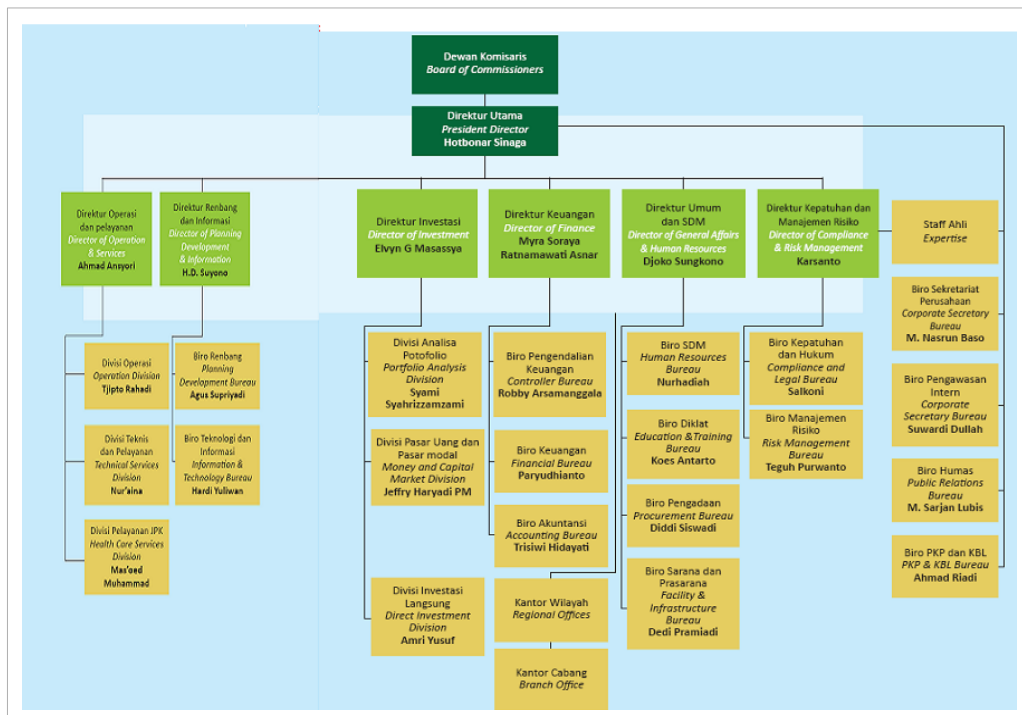
주요업무는 강제법을 규정에 따른 이행, 국가정책 및 공공정책의 조율, 기술정책 및 개발과 다른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이 있으며

- 법률, 조직 및 홍보 관리국
- 재정, 관리 및 기획 관리국
- 검사국
- 표준 응용시스템 센터 : 시스템 및 건설 인프라 표준/품질보증시스템 처리
- 인증기관 인증센터 : 제품, 교육 및 인증 분야 정책수립, 개발, 프로그램조정
- 연구소 인증 및 검사연구소 센터

- 표준화 연구 및 협력부
- 연구 및 표준화 개발 센터
- 표준화에 대한 협력센터
- 표준 책정센터
- 표준화 정보와 문화센터
- 교육 및 사회화에 대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근로자 권익보호기구(JAMSOSTEK)

Jamsostek는 국내의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한 기구로 4대 기금을 관장하고 있으며 본부와 8개의 지역본부, Class 1의 지방사무소 28개소, Class 2의 지방사무소 47개소, Class 3의 지방사무소 46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2007년 8월 1일자로 제정된 KEP/190/082007 이사회결정서에 조직이 명시되어 있으며 100%정부에 의해 출연된 기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관련 주요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인력 · 이주부(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

Jl.Jendral Galot Subroto Kav 51 Jakarta Pusat-Kemenakertrans  
Tel. 62-21-525 5685  
Fax. 62-21-525 6559  
www.depnakertrans.go.id

### ●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인증제도 관리기관)

전화 : 62-21-574-7043  
팩스 : 62-21-574-0745  
이메일 : bsn@bsn.or.id

이외 주요 관공서의 주요업무 및 연락처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기관명   | 주요업무                                     | 연락처                                                                                                                        |
|-------|------------------------------------------|----------------------------------------------------------------------------------------------------------------------------|
| 관세청   | 세관업무,수입수출세에 관한 업무                        | www.beacukai.go.id<br>Ji.Jendral A.Yani JKT 1320 Kotak Pos 108 Jakarta 10002<br>Tel. 62-21-489 0308<br>Fax. 62-21-489 7928 |
| 투자조정원 | 외국인 투자유치 및 투자승인에 관한업무, 영구사업허가서 발급        | www.bkpm.go.id<br>Ji.Gatot Subroto No.44 Jakarta 12190<br>Tel. 62-21-5292-1334<br>Fax 62-21-5264-211                       |
| 법무부   | 회사 정관승인, 관보공고                            | www.kemenkumham.go.id<br>JL.Rasuna said kav 6-7,Jakarta selatan<br>Tel. 62-21-525 3004<br>Fax. 62-21-525 3095              |
| 국세청   | 세무등록번호(NPWP)발급, 부가 가치세,과세업자 등록,영문회계 승인 등 | www.pajak.go.id<br>Jl.Jenderal Galot Subroto No. 40-42 Jakarta Selatan 12190<br>Tel. 62-21-525 0208<br>Fax. 62-21-584 792  |





## ● Jamsostek(본부와 8개소의 지역본부)

**Kanwil I** Regional Office I  
Jl. Kapten Patimura No. 334  
Medan 20153  
Tlp. (061) 4536184  
Fax. (061) 4532818

**Kanwil II** Regional Office II  
Jl. Basuki Rahmat No. 1303 A-B  
Palembang 30126  
Tlp. (0711) 350309  
Fax. (0711) 350538

**Kanwil III** Regional Office III  
Gedung Selatan  
Menara Jamsostek Lt. 8 Tower B  
Jl. Gatot Subroto No. 38  
Kav. 71-73. Jakarta Selatan  
Tlp. (021) 5229291  
Fax. (021) 5229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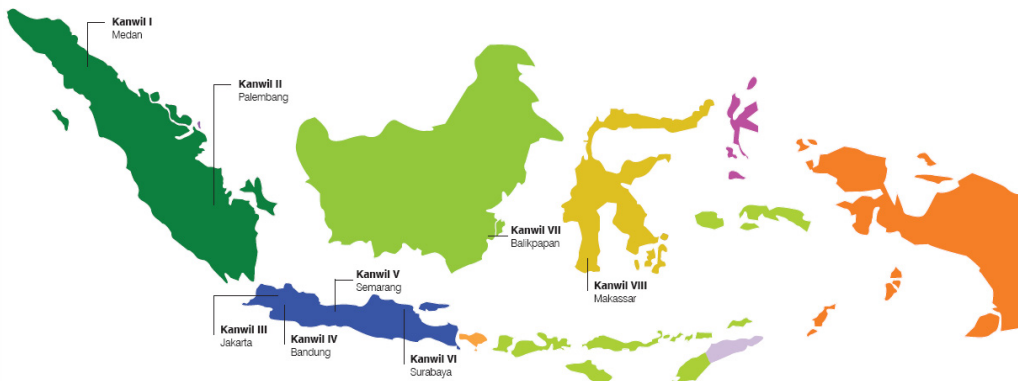
**Kanwil IV** Regional Office IV  
Jl. P. Hasan Mustofa No. 39  
Bandung 40124  
Tlp. (022) 7200610, 7102732  
Fax. (022) 7200609

**Kanwil V** Regional Office V  
Jl. Pemuda No. 130  
Semarang 50132  
Tlp. (024) 3559563, 3559564  
Fax. (024) 3517623, 3557627

**Kanwil VI** Regional Office VI  
Jl. H.R. Muhammad  
No. 338. Surabaya  
Tlp. (031) 5027692, 5033853  
Fax. (031) 5029285

**Kanwil VII** Regional Office VII  
Jl. Jend. Sudirman Kav. 43  
Blok H-1-2. Balikpapan  
Tlp. (0542) 734962, 440779  
Fax. (0542) 423264

**Kanwil VIII** Regional Office VIII  
Jl. Gunung Bawakaraeng  
No. 222. Makassar  
Tlp. (0411) 452373, 452873  
Fax. (0411) 452539



**Kantor Pusat Head Office**  
Jl. Jend. Gatot Subroto No. 79  
Jakarta Selatan 12930  
Tlp. (021) 5207797  
(Hunting 20 Lines)  
Fax. (021) 5202310



## 나. 웹사이트 주소록

❖ 인도네시아에 있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알 수 있습니까?

| Supreme State Institutions                                      |                               |
|-----------------------------------------------------------------|-------------------------------|
|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 www.mpr.go.id                 |
| House of Representative                                         | www.dpr.go.id                 |
| Board of The Region Representative                              | www.dpd.go.id                 |
| Supreme Audit Board                                             | www.bpk.go.id                 |
| Supreme Court                                                   | www.mahkamahagung.go.id       |
| Constitution Court                                              | www.mahkamahkonstitusi.go.id/ |
| Corruption Erradicate Comission                                 | www.kpk.go.id/                |
| Judicial Comission                                              | www.komisiyudisial.go.id      |
| Coordinating ministers                                          |                               |
| Coordinating Minister for Legal, Political dan Security Affairs | www.polkam.go.id              |
| Coordinating Minister for the Economy                           | www.ekon.go.id/               |
| Coordinating Minister for People's Welfare                      | www.menkokesra.go.id          |
| Departmental ministers                                          |                               |
| Minister of Home Affairs                                        | www.depdagri.go.id            |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www.deplu.go.id               |
| Minister of Defense                                             | www.dephan.go.id              |
|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 www.depukumham.go.id          |
| Minister of Finance                                             | www.depkeu.go.id              |
| 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www.esdm.go.id                |
| Minister of Industry                                            | www.depperin.go.id            |
| Minister of Trade                                               | www.depdag.go.id              |
| Minister of Agriculture                                         | www.deptan.go.id              |
| Minister of Forestry                                            | www.dephut.go.id              |
| Minister of Transportation                                      | www.dephub.go.id              |
|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www.dkp.go.id                 |
| Minister of Labor and Transmigration                            | www.nakertrans.go.id/         |
| Minister of Public Works                                        | www.pu.go.id                  |
| Minister of Health                                              | www.depkes.go.id              |
|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 www.depdi.knas.go.id          |
| Minister of Social Services                                     | www.depsos.go.id              |
| Minister of Religious Affairs                                   | www.depag.go.id               |
|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www.depkominfo.go.id          |
| Minister or Culture and Tourism                                 | www.budpar.go.id              |



| Non Departmental Government Institutions                            |                        |
|---------------------------------------------------------------------|------------------------|
|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www.lan.go.id          |
| Central Bank of Indonesia                                           | www.bi.go.id           |
| National Archives                                                   | www.ica.org            |
| The National Civil Service Agency                                   | www.bkn.go.id          |
| National Library                                                    | www.digilib.pnri.go.id |
| Central Agency of Statistics                                        | www.bps.go.id          |
| Agency for National Standardization                                 | www.bsn.or.id          |
| Agency for Nuclear Energy Control                                   | www.bapeten.go.id      |
| Agency for National Nuclear Energy                                  | www.batan.go.id        |
| State Secrets Institute                                             |                        |
| Agency for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 www.bkkbn.go.id        |
| The Institute of National Space and Aviation                        | www.lapan.go.id/       |
| Agency for Coordination of Survey and National Mapping              | www.bakosurtanal.go.id |
| Finance Supervision and Development Board                           | www.bpkp.go.id         |
|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 www.lipi.go.id         |
| Financial 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 www.bkpm.go.id         |
| Agency for National Land Affairs                                    | www.bpn.go.id/         |
| Agency for Control of Medicine and Food                             | www.pom.go.id/         |
| National Endurance Institution                                      | www.lemhannas.go.id    |
| National Defence Council                                            | www.pom.go.id/         |
| State Ministry                                                      |                        |
| State Minister for Research and Technology                          | www.ristek.go.id       |
| State Minister for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www.depkop.go.id       |
| Stat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 www.menlh.go.id        |
| State Minister for Women Empowerment                                | www.menegpp.go.id      |
| State Minister for Making Efficient Use of the State Apparatus      | www.menpan.go.id       |
| State Minister for Development Acceleration of Left Behind Regional | www.kemenegpdt.go.id   |
| State Minister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 www.bappenas.go.id     |
| State Minister for Agency of State                                  | www.bumn-ri.com        |
| State Minister for People Housing                                   | www.kemenpera.go.id    |
| State Minister for Youth and Sports Affairs                         | www.kemenegpora.go.id  |

※ 자료원 : KOTRA

## 4 기 타

### 가. 인도네시아 현황

#### ❖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1945년 8월 17일 네덜란드에서 독립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로 인도네시아어와 205여 개의 지방어 및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86%가 이슬람교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250백만명, 면적은 1904천  $\text{km}^2$ 으로 한반도의 8.5배 면적에 달하며 약 17,508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지역은 넓고 습하며 고지대는 다소 시원한 편으로  $21^{\circ}\text{C}\sim 33^{\circ}\text{C}$ 이며 습도는 연중 80%임

인도네시아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      |
|---------------------------|------|
| 빠머린다 뿌삿(Pemerintah Pusat) | 중앙정부 |
| ▼                         |      |
| 쁘로쁘insi(Propinsi)         | 주    |
| ▼                         |      |
| 까부빠펜, 꼬따(Kabupaten, Kota) | 시도   |
| ▼                         |      |
| 끄찌마탄(Kecamatan)           | 군    |
| ▼                         |      |
| 끄루라한,데사(Kelurahan, Desa)  | 동면   |
| ▼                         |      |
| 두순(Dusun)                 | 리    |
| ▼                         |      |
| 에르외(RW)                   | 통    |
| ▼                         |      |
| 에르떼(RT)                   | 반    |

#### 나. 경제현황 및 교역량

#####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얼마나 됩니까?

- '09년 기준 우리나라 10위 교역대상국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등 우리나라 필수 천연자원 공급처임

##### | 연도별 수출입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주요품목           |
|----|-------|-------|-------|--------|-------|----------------|
| 수출 | 5,046 | 4,874 | 5,771 | 7,039  | 6,000 | 석유제품,철강판, 합성수지 |
| 수입 | 8,184 | 8,849 | 9,114 | 10,758 | 9,264 | 천연가스, 석탄, 원유   |

- 국교수립 : 1973년 9월 18일
- 주요협정 :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



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항공협정(1989년), 문화협력협정(2000년), 범죄인 인도조약(2000년)

※ 자료원 :

인도네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현황(한국수출입은행, 2008.12)에서 발췌

인도네시아 개황(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2010.06.20)

## ∴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업구조는 제조업 47.1%, 서비스업 38.5%, 농림수산업 14.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세계 2개 LNG 수출국이며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인구대국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함

### | 주요 경제지표 |

| 경제지표         | 단 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GDP          | 억 달러 | 2,568  | 2,859  | 3,646   | 4,328   | 5,100   | 5,279    |
| 1인당 GDP      | 달러   | 1,140  | 1,250  | 1,570   | 1,840   | 2,150   | 2,197    |
| 경제성장률        | %    | 5.1    | 5.7    | 5.5     | 6.3     | 6.1     | 4.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6.4    | 17.1   | 6.6     | 6.6     | 11.1    | 4.6      |
| 환율(달러당, 연평균) | Rp   | 8,940  | 9,713  | 9,167   | 9,140   | 9,666   | 10,399.2 |
| 경상수지         | 백만달러 | 1,562  | 275    | 10,837  | 11,009  | 11,378  | 10,700   |
| 상품수지         | "    | 20,152 | 17,532 | 29,661  | 33,083  | 34,896  | 33,813   |
| 수출           | "    | 70,766 | 86,995 | 103,528 | 118,014 | 148,502 | 119,346  |
| 수입           | "    | 50,615 | 69,463 | 73,867  | 84,931  | 113,606 | 85,533   |
| 서비스수지        | "    | -8,811 | -9,123 | -9,887  | -11,102 | -13,468 | ..       |
| 자본수지         | "    | -667   | -2,253 | -644    | -1,251  | ..      | ..       |
| 외환보유액        | 억 달러 | 363    | 347    | 425     | 569     | 516     | 636      |

## 다. 투자현황

### :: 국내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1 주요국가해외투자편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4분기 투자실현은 35건, US\$ 8,640만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기준 섬유 및 섬유 관련 업체가 300여개사 전기 및 전자관련 업체 200여개사로 섬유, 봉제, 전자등 노동 집약적 산업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건설, SOC 등 기간산업분야 및 석탄개발 등 자원분야, 팜, 옥수수등 농장개발 및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현황 |

단위 : 백만불

| 업종       | 2008 |       | 2009 |       | 증 감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차 산업    | 3    | 16    | 3    | 25    | 0   | 9      |
| 농업       | -    | -     | 1    | 10    | 1   | 10     |
| 축산업      | -    | -     | -    | -     | -   | -      |
| 임업       | -    | -     | -    | -     | -   | -      |
| 수산업      | -    | -     | -    | -     | -   | -      |
| 광업       | 3    | 16    | 2    | 15    | -1  | -1     |
| 2차 산업    | 100  | 223.9 | 105  | 293.2 | 5   | 69.3   |
| 식품       | 1    | 4     | 3    | 1.1   | 2   | -2.9   |
| 섬유       | 31   | 49.9  | 41   | 91.6  | 10  | 41.7   |
| 피혁/신발    | 10   | 76.5  | 6    | 5.8   | -4  | -70.7  |
| 목재       | 3    | 1.59  | 2    | 8     | -1  | 6.41   |
| 제지/인쇄    | 4    | 1.21  | 6    | 6.4   | 2   | 5.19   |
| 화학/제약    | 3    | 4.19  | 2    | 1.2   | -1  | -2.99  |
| 고무/플라스틱  | 8    | 11.9  | 13   | 9     | 1   | -2.9   |
| 비철금속     | -    | -     | -    | -     |     |        |
| 금속/기계/전자 | 29   | 69.3  | 20   | 161   | -9  | -91.7  |
| 의료/광학/시계 | 1    | 1.5   | 1    | 0.8   | 0   | -0.7   |
| 자동차/수송장비 | 2    | 1.07  | -    | -     | -2  | -1.07  |
| 기타       | 8    | 2.71  | 11   | 15.4  | 3   | 12.69  |
| 3차 산업    | 79   | 61    | 78   | 305   | -1  | 244    |
| 건축/건설    | 4    | 9.63  | 2    | 153.2 | -2  | 143.57 |
| 무역/서비스   | 61   | 39    | 58   | 30    | -3  | -9     |
| 호텔/요식업   | 3    | 5     | 1    | 38    | -2  | 33     |
| 수배송/통신   | 4    | 1     | 5    | 51    | 1   | 50     |
| 부동산      | -    | -     | 4    | 30.4  | 4   | 30.4   |
| 기타       | 7    | 6.3   | 8    | 3     | 1   | -3.3   |
| 총계       | 182  | 301   | 186  | 624.6 | 4   | 323.6  |

※ 자료원 : 2011 주요국가해외투자편람 참조



❖ 인도네시아의 주요산업은 무엇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주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한국 기업의 부문별 진출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개발, 전국적 판매망 확보등으로 2009년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마크로 매장 19개를 인수하여 창고형 할인 매장 사업에 진출하는 등 뚜레주르와 같은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의 부문별 진출현황 |

| 부문            | 업체수 | 부문          | 업체수 | 부문        | 업체수   |
|---------------|-----|-------------|-----|-----------|-------|
| 제조업           | 952 | (통신 · 컴퓨터)  | 45  | (무역 · 금융) | 51/17 |
| (의류 · 봉제)     | 217 | (건설 · 선박)   | 45  | (여행사/학원)  | 33/39 |
| (섬유)          | 108 | (가발 · 약세사리) | 36  | (미용실사우나)  | 34    |
| (금속 · 기계)     | 81  | (출판 · 인쇄)   | 27  | (컨설팅)     | 36    |
| (전기 · 전자)     | 72  | (농임수산업)     | 19  | (차량정비/렌트) | 19/7  |
| (석유 · 화학)     | 57  | (연마제등 기타)   | 21  | (기타)      | 12    |
| (신발 · 완구)     | 56  | (광업)        | 19  | 총계        | 1,346 |
| (고무 · 플라스틱)   | 54  | 기타서비스업      | 394 |           |       |
| (운송 · 창고)     | 50  | (음식 · 숙박)   | 112 |           |       |
| (종이 · 목재(가공)) | 50  | (도 · 소매)    | 84  |           |       |

※ 자료원 : 2011 주요국가해외투자편람 참조



## | 인도네시아 진출 10대 한국기업 목록 |

| 연번 | 회사명                      | 투자년도 | 투자내역                                        | 투자금액<br>(단위: 백만불) |
|----|--------------------------|------|---------------------------------------------|-------------------|
| 1  | CJ인도네시아                  | 1988 | 식료품,핵산,MSG,사료제조업                            | 800               |
| 2  | 코린도 그룹                   | 1969 | 목재,조림,제지, 중공업 등                             | 550               |
| 3  | Kideco Jaya Agung        | 1982 | 석탄,원유 및 천연 가스광업/금속광업                        | 349.251           |
| 4  | SK Keris                 | 199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50               |
| 5  | 외환은행                     | 1990 | 금융업                                         | 112               |
| 6  | KOLON인나                  | 1995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00               |
| 7  | Kirin-Miwon Foods        | 2006 | 식료품 제조업                                     | 100               |
| 8  | LP Displays<br>Indonesia | 2001 |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97                |
| 9  | SK에너지(주)                 | 2006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업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87.5              |
| 10 | LG EDI                   | 1995 | 모니터, DVD,홈시어터 등                             | 75                |
| 11 | 삼성전자                     | 1991 | VCR,CD,ROM등 전자제품                            | 68                |

주) 설문 비응답업체는 포함되지 않음(KOTRA 자체조사)

### ❖ 인도네시아에도 투자우대분야, 투자금지분야등이 있습니까?

2007년 4월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및 직접투자 유입 확대를 위한 신투자법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 중 일부산업에 대하여 강화되었으나 규정 자체는 종전보다 명료화되고 투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신투자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PMA:Penanaman Model Asing)영역이나 업종은 몇가지 범주로 나뉘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금지된 업종
- 외국인 소유지분이 95%까지 허용된 전략적 활동 업종
  - 항구와 화물선적
  - 대기를 통한 전기 송전 및 분배
  - 텔레커뮤니케이션
  - 항공, 수도
  - 철도
  - 원자력
- 국내 주주와의 합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업종
- 제한된 조건하에 투자가 허용된 업종
- 국내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
- 국내의 중대규모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 소규모 사업체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 투자 할 수 있는

신투자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8%에서 2010년 25%로 인하
- 개인소득세는 기존 33%에서 2010년 30%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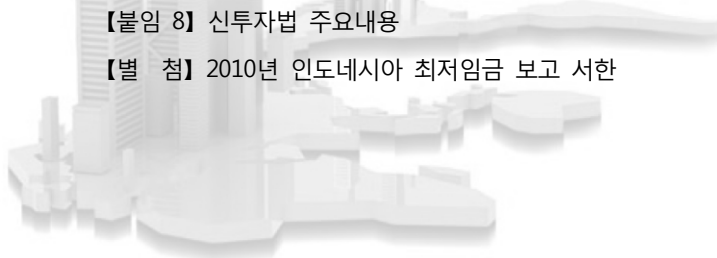
신투자법은 전문 및 17개 장과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붙임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인도네시아편

- 【붙임 1】 2003 인도네시아 노동법 관련 주요사항
- 【붙임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시행령 목차
- 【붙임 3】 재해보고서 작성양식
- 【붙임 3-1】 재해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 【붙임 3-2】 직업관련 질병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 【붙임 3-3】 화재/폭발/폐수처리 설비 위험조사 및 평가보고서 양식
- 【붙임 4】 인도네시아 SNI 통관강제 인증품목
- 【붙임 5】 보호구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 【붙임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 【붙임 7】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시 보상기준 비율(장애등급표)
- 【붙임 8】 신투자법 주요내용
- 【별 첨】 2010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보고 서한





## 총칙

### 〈제1장〉(제1조)

- 1항. 노무·노동이란 근로기간 이전, 시행중, 이후에 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함
- 6항. 기업이란 법인이든 아니든, 법인소유이든 개인 또는 국가소유이든 노동자에게 봉급 또는 금품을 주고 종사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체를 말함
- 13항. 외국인력이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작업할 목적을 갖고 비자를 받은 외국사람을 말함
- 14항. 근로협약이라함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 및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한 양자간의 협약을 말함
- 15항. 노사관계라 함은 작업내용 임금 이행사항등을 담은 근로협약에 의거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맺어진 관계를 말함
- 17항. 노조라 함은 사업체 내외에서 노동자로부터, 노동자에 의해, 노동자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노동자와 가족의 복리증진과 노동자 권익 쟁취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 22항. 노사관계 분류라함은 한 회사에서 사업가와 노조 노동자간의 권리 이익 해고를 둘러싼 분쟁 또는 노조간 분류가 발생해 양측 간 충돌을 초래하는 입장차이를 말함
- 26항. 미성년이라함은 18세 미만인자를 말함
- 27항 주간은 06:00~18:00간의 시간범위를 말함
- 29항. 1주는 7일 기간을 말함
- 30항. 임금은 노사 간 단체협약등 합의 또는 법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대가를 사용자로부터 금전형태로 받을 수 있는 고유권리를 말하며 임금에는 노동자가 수행했거나 수행할 근로활동 또는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노동자 및 가족수당도 포함됨.
- 31항. 노동자 복지라함은 안전 쾌적한 사업환경은 물론 생산성증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산업장 내외에서 노동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등을 충족시켜 주는 제반여건을 말함

### 〈제2장〉(제2조~제4조) 준거원리목적

### 〈제3장〉(제5조~제6조) 균등한 기회 및 대우

### 〈제4장〉(제7조~제8조) 인력기획 및 노동 노무 정보

〈제5장〉(제9조~제30조) 직업훈련

〈제6장〉(제31조~제38조) 인력배치

〈제7장〉(제39조~제41조) 노동 근로기회 확대

〈제8장〉(제42조~제49조) 외국인 인력사용

- 1항.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음
- 2항.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노동자는 사용이유, 회사조직표상 직책, 사용기간, 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명시된 사용계획서를 소지해야 함
- 3항. 외국노동자는 인사업무 담당 등에 특정 직책을 맡을 수 없음, 특정직책을 맡는 경우 노동부 장관령 규정에 따름

〈제9장〉(제50조~제66조) 근로관계

[제 54조]

- 1항. 서면형식의 고용계약에는 회사이름·주소·업종·노동자성명·성별·연령·주소·직업직책 및 종류·작업장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무 및 권리를 담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계약·발표시기·기간·체결장소 및 시기와 관계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 3항. 2부 이상 작성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함

[제 55조]

고용계약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철회 변경될 수 없음

[제 57조]

- 1항. 일정시기를 규정한 고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인도네시아어와 라틴 알파벳을 사용해야 함
- 3항.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작성된 고용계약에 대해 언어간에 해석상 차이가 생길 경우 영어로 작성된 계약이 우선함

[제 58조]

- 1항. 일정시기를 목적으로 한 고용계약은 근로수습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없음

[제 59조]

- 1항. 일정시기에 종료되는 작업, 3년 미만의 작업기간이 예상되는 업무, 계절작업과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작업일 경우 가능함
- 4항~6항 일정시기를 목적으로 한 고용계약의 기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1회 1년동안 연장할수 있음. 재계약은 30일의 휴식기를 가진 뒤 1회 2년에 한해 가능하며 연장은 계약만료 7일전까지 문서로 해당 노동자에게 통보해야함.

[제 60조]

일정치 않은 시기를 목적으로 한 고용계약은 최장 3개월까지 근로수습기간을 둘 수 있

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자는 기본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

**[제 61조]**

노동자의 사망, 고용계약 유효기간의 만료, 법원의 확정판정 결과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 협약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일정한 상황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용계약을 종료함

**[제 62조]**

일정시기를 목적으로 맺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상 규정된 시기가 되기 전 어느 일방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또는 노동자의 사망, 고용계약 유효기간의 만료, 법원의 확정판결, 고용계약, 사규, 단체협약상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사건의 발생 등을 제외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의 종료를 초래한 당사자는 당초 고용계약 만료시점까지 노동자 임금만큼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보상금 형식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제10장 1부〉 〈제67조~제75조〉노동자보호, 임금 및 복지**

**[제 67조] 장애인**

- 1항.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장애 등급 및 내용에 맞춰 보호시설 및 도구를 마련해줄 의무가 있음
- 2항. 1항에 의한 보호시설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함

**[제 68조] 아동**

회사는 아동을 채용할 수 없음

**[제 69조] 아동**

- 1항. 제6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는 아동을 채용할 수 없으나 13세~15세의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경미한 작업에 종사할 수 있음
- 2항. 경미한 작업은 아래 조건을 준수해야함
  - a. 회사는 아동보호자 또는 부모로부터 서면확인을 받아야 함
  - b. 회사는 아동보호자 또는 부모로부터 업무동의서를 체결해야 함
  - c. 최대 근무시간은 3시간 이내임
  - d. 수업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 날 할 수 있음
  - e. 산업안전 및 보건사항 준수
  - f. 고용관계가 명백해야 함
  - g. 연금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함
- 3항. 상기 조건에 대하여 가족형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제 76조] 여성

- 1항. 18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를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돼있음
- 2항. 회사들은 의사의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 임신한 여성자가 저녁 11시부터 아침 11시 사이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 받거나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을 경우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
- 3항.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 a. 그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 b.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미풍약속을 유지해야 한다.
- 4항. 기업가들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퇴근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5항. 3, 4항에 언급된 항목들은 행정상의 결정에 의해 규제된다.

### [제 77조] 근무시간

- 1항. 모든 회사들은 근무시간과 관련된 법조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 2항. 근무시간은 다음에 언급된 사항과 같다.
  - a. 1주 6일 근로시 1일 7시간, 1주 40시간
  - b. 1주 5일 근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 3항. 2항에서 언급된 근무시간과 관련된 법조항을 특별한 사업 부문이나 특정 분야에 적용해서는 안됨.
- 4항. 근무시간과 관련되어 특별한 사업 부문이나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근무 시간에 대한 법 규정은 행정상의 결정에 의해 규제된다.

### [제 78조] 근무시간

- 1항. 77조 2항에 언급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
  - a. 관련 근로자의 승인
  - b. 최대 초과근무는 1일 3시간, 1주 14시간
- 2항. 1항에 언급된 초과근무자에게 사업주는 초과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3항. 1항의 b 에서 언급된 초과근무에 관해서 특별한 사업 부문이나 특정 분야에 적용하지 않음.
- 4항. 2, 3항에 언급된 사항은 행정상의 결정에 의해 규제된다.

### [제 79조] 휴가

- 1항. 기업가들은 근로자의 휴식, 휴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2항. 1항은 다음내용이 추가.



- a. 근무시간 반 이상 사이의 휴식 시간, 연속 4시간 근무 이후의 휴식시간은 작업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주에 1일 휴식 6일 근무, 2일 휴식 5일 근무로 한다.
  - b. 근로자가 12개월 연속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간 12일(Workday)의 휴식을 준다.
  - c. 6년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1개월의 휴가가 주어지며 7년 또는 8년에 수여되는 휴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년간은 연차 휴가가 없으며 매 6년마다 적용한다.
- 3항. 2항의 c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작업 동의, 회사 규제, 종합적인 노동 동의에 의해 규제된다.
- 4항. 2항에서 언급된 장기휴가는 확실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 5항. 4항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행정상 결정에 의해 규제된다.

#### [제 80조] 종교

회사는 근로자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81조] 여성

- 1항. 여성 노동자는 생리시 생리통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한 후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없음

#### [제 82조] 여성

- 1항. 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산일 계산에 의거해 출산 전 1.5달간. 출산 후 1.5달간 휴가를 부여해야 함
- 2항. 유산한 경우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진단에 따라 1.5달의 휴가를 줘야 함

#### [제 83조] 여성

모유수유가 필요한 산모를 위해 작업시간에 유아에게 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 [제 84조] 여성

79조, 80조, 82조에 언급된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한다.

#### [제 85조] 초과임금

- (1) 모든 근로자는 국경일에 일할 의무가 없다.
- (2) 작업이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3) 2항에 언급된 근로자들은 초과임금을 받아야 한다.
- (4) 2항에 언급된 특별한 상황은 행정상 결정에 의해 규제된다.

#### [제 86조] 안전과 건강

- 1항. 모든 근로자는 작업의 안전과 건강, 도덕성과 윤리성, 종교적 가치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 [제 87조] 안전과 건강

- 1항. 모든 작업장은 노동안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2항. 1항에 언급된 사항은 정부 규제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 [제 88조] ~ [제 98조] 임금

#### [제 88조]

- (1) 모든 근로자는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1항에서 언급된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할 임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3) 임금 정책은 2항에서 언급된 사항을 보호할 것이다.
  - a. 최저임금
  - b. 초과임금
  - c. 유급휴가
  - d.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할 때 유급휴가 보장
  - e.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임금 지급
  - f. 임금 지급의 형식과 방법
  - g. 급여에서의 벌금과 공제
  - h. 급여를 이용한 다른 계단 방법들
  - I. 균형 잡힌 급여 구조와 규모
  - j. 계약해제에 의한 급여 지급
  - k.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
- (4) 정부는 3항 a를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구성한다.

#### [제 89조]

- (1) 88조 3항에 구성된 최저임금
  - a. 지방, 지역 중심의 최저임금
  - b. 시, 군 지역단위의 업종별 최저임금
- (2)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설립
- (3) 지방 임금 의회나 지역 대표가 추천하고 정부가 고려하여 1항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수립
- (4) 위의 사항은 행정상 결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 [제 90조]

- (1) 기업가는 89조에 언급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쥐선 안 된다.
- (2) 89조에 언급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가는 연기를 허락받아야 한다.

- (3) 2항에 언급된 연기는 행정상 결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

**[제 91조]**

- (1) 노동조합과 기업가가 합의하여 정해진 급여는 법이나 규제로 정해진 급여보다 낮아선 안 된다.
- (2) 급여가 낮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92조]**

- (1) 기업가는 근로자의 책임수준, 지위, 경력, 교육수준, 능력을 토대로 급여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
- (2) 기업가는 기업의 재정적인 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고려해야 한다.
- (3) 위와 같은 사항은 행정상 결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

**[제 93조]**

- (1)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은 제외된다.
- a. 근로자의 질병
  - b. 여성 근로자의 생리 기간 첫째, 두 번째 날
  - c. 본인 결혼, 자녀 결혼, 할례, 세계행사 참석, 부인의 출산 및 유산, 남편·아내·부모·처부모·형제의 사망 시
  - d. 국가의무 이행
  - e. 종교 활동
  - f. 사용자 사정에 따라 혹은 예방 가능한 장애요인 발생
  - g. 휴가권 사용
  - h. 사용자가 동의한 노조 임무 수행
  - I. 회사 교육활동 참여
- (3) 2항과 관련된 사항
- a. 처음 4개월은 임금의 100%
  - b. 두 번째 4개월은 임금의 75%
  - c. 세 번째 4개월은 임금의 50%
  - d. 이후 사용자가 해고하기 전까지는 매월 임금의 25% 지급해야 함
-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a. 본인 결혼 시 3일 유급휴가
  - b. 자녀 결혼 시 2일 유급휴가
  - c. 자녀 할례 시 2일 유급휴가
  - d. 자녀 세례 시 2일 유급휴가

- e. 부인의 출산 및 유산일 경우 2일 유급휴가
- f. 배우자, 부모, 처부모 사망 시 2일 유급휴가
- g. 동거가족의 사망 시 1일 유급휴가

(5) 위와 같은 사항은 노동 규약, 회사 규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정해진다.

#### [제 94조]

이 급여들이 기본 급여의 75% 미만인 되어서는 안 된다.

#### [제 95조]

- (1) 근로자가 위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과실이 생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 (2)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부주의에 의해 임금을 늦게 지불하는 기업가는 근로자 임금의 특정 퍼센트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3) 정부는 근로자나 기업가의 임금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규제한다.
- (4)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기업이 파산 또는 청산을 선언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우선적으로 지불 되도록 해야 한다.

#### [제 96조]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청구 및 고용에서 발생하는 지불의 다른 모든 청구 관계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 2년경과 후 만료한다.

#### [제 97조]

88항에 언급된 품위 있는 소득에 관한 규정, 임금 정책, 품위 있는 삶과 근로자의 임금 보호 등, 89항에 언급된 최저임금, 95조 1·2·3항에 언급된 벌금의 부과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규제된다.

#### [제 98조]

- (1) 정부에 의해 설립된 임금 정책 수립에 관한 추천 및 고려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임금 시스템 개발, 임금위원회, 주정부 임금위원회, 시 임금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
- (2) 1항에 언급된 의회는 정부대표, 기업가 조직, 무역/노동 조합, 대학 및 전문가들의 멤버로 구성돼야 한다.
- (3) 국가 수준의 임금위원회 회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해야하는 동안 주 임금위원회, 시 임금위원회는 주/지역/도시의 대표가 임명된다.
- (4) 1·2항에서 언급된 형성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 임명 절차의 회원 구성, 회원 및 임무를 취소하기 위한 작업과 임금 제도 위원회의 절차는 대통령의 규제에 의해 결정된다.

#### [제 176조] ~ [제 181조] 감독

#### [제 176조]

근로 검사는 노동 법률과 규제로 이행을 보장받은 능력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근로

조사관이 정부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

**[제 177조]**

176조에 언급된 근로 조사관은 노동 검사 장관 임명에 의해 정해진다.

**[제 178조]**

- (1) 근로 검사는 주정부, 주립 정부, 구/도시 정부의 근로 분야에서 의무와 책임을 가진 정부 기관의 별도의 업무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 (2) 1항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검사는 대통령 결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

**[제 179조]**

- (1) 178조에서 언급된 근로 검사에 대한 작업 단위인 주립 정부, 구/도시 정부는 장관에게 근로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2) 1항에 언급된 보고서 제출 과정은 장관급 결정에 의해 규제된다.

**[제 180조]**

선임을 위한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권한에 관한 규정, 176조에 의한 근로 감독은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의한 것이다.

**[제 181조]**

176조에서 언급한 직무 수행, 감독관들의 의무

- a. 모든 가치와 사실들을 비밀로 유지한다.
- b.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183조] ~ [제 189조] 형사규정**

**[제 183조]**

- (1) 74조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최소 2년,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최소 200,000,000루피 혹은 최대 500,000,000 루피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죄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제 184조]**

- (1) 167조 5항에 언급된 조항을 위반할 시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최소 100,000,000루피 최대 500,000,000 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제 185조]**

- (1) 42조 1·2항, 68조, 69조 2항, 80항, 82항, 90조 1항, 139조, 143조, 160조 4·7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1년 최대 4년 징역형 혹은 최소 100,000,000루피 최대 4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제 186조]**

- (1) 35조 2·3항, 93조 2항, 137조, 13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1개월 최대 4년의 징역 혹은 최소 10,000,000루피 최대 4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제 187조]**

- (1) 37조 2항, 44조 1항, 45조 1항, 67조 1항, 71조 2항, 76조, 78조 2항, 79조 1·2항, 85조 3항, 14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 혹은 최소 10,000,000 최대 100,000,000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제 188조]**

- (1) 14조 12항, 38조 2항, 63조 1항, 78조 1항, 108조 1항, 111조 3항, 114조, 14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소 5,000,000 최대 50,000,000 루피의 벌금형에 처한다.
- (2) 1항에 언급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중범죄로 분류된다.

**[제 189조]**

제재는 기업가가 감옥에 가는 형태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은 근로자의 보상에 대한 기업가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제 190조]~ [제 191조] 행정제재**

**[제 190조]**

- (1) 장관 또는 임명 관계자는 5조, 6조, 15조, 25조, 38조 2항, 45조 1항, 47조 1항, 48조, 87조, 106조, 126조 3항, 160조 1·2항의 행동과 그 시행 규정에 관해 행정적 규제를 부과한다. 1항의 사항들은 다음에 언급된 행정 제재 양식에 걸릴 수 있다.
  - a. 견책
  - b. 서면 경고
  - c. 기업의 영향을 받는 사업 활동을 제한
  - d. 기업의 영향을 받는 기업 활동 동결
  - e. 승인 취소
  - f. 등록 취소
  - g. 전체의 제작 도우의 종료
  - h. 페지·라이선스 또는 허가 취소의 운영
- (2) 1·2항에 언급된 사항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규제할 수 있다.

**[제 191조]**

인력을 조절하는 모든 이행 규제는 반대되거나 새로운 규제에 의해 교체되지 않을 때까지는 효과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끝.

【붙임 2】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 및 시행령 목록 |

| 제정년도 | 제정부처 | 규정번호 | 내용                                           |
|------|------|------|----------------------------------------------|
| 1930 | 정부   | -    | 증기보일러에 대한 설계, 생산, 이송, 설치, 사용, 응용 및 유지에 대한 안전 |
| 1973 | 정부   | 7    | 살충제에 대한 저장, 사용, 재사용에 대한 감독                   |
| 1973 | 정부   | 19   | 광산분야에 대한 안전 및 감독 규정                          |
| 1979 | 정부   | 11   | 오일 및 가스의 가공 및 정유공장에 대한 안전                    |
| 1976 | 인력부  | 1    | 회사에 고용된 의사의 훈련의무                             |
| 1978 | 인력부  | 1    | 통나무 및 제재 이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
| 1978 | 인력부  | 3    | 노동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의무와 권한                    |
| 1979 | 인력부  | 1    | 회사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위생의무                          |
| 1980 | 인력부  | 1    | 건설에 있어서의 산업안전 및 보건                           |
| 1980 | 인력부  | 2    | 산업안전경영에서의 건강진단                               |
| 1980 | 인력부  | 4    | 소화기의 유지 및 설치                                 |
| 1981 | 인력부  | 1    | 작업장에서의 직업질병 보고의무                             |
| 1982 | 인력부  | 1    | 압력용기의 제조, 검사 및 시험절차                          |
| 1982 | 인력부  | 2    |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 종류                               |
| 1982 | 인력부  | 3    | 노동건강                                         |
| 1983 | 인력부  | 2    | 자동화재경보기 설치                                   |
| 1985 | 인력부  | 3    | 석면사용에서의 산업안전보건                               |
| 1985 | 인력부  | 4    | 동력기계의 생산, 기술요건, 검사 및 시운전 절차                  |
| 1985 | 인력부  | 5    | 리프팅장치의 분류, 검사 및 시운전 절차                       |
| 1987 | 인력부  | 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절차                                 |
| 1988 | 인력부  | 1    | 보일러 운전자의 자격 및 필요조건                           |
| 2010 | 인력부  | 9    | 리프팅 분류 및 장비 운전자의 필요조건                        |
| 1989 | 인력부  | 2    | 조명보호장비 설치 감독                                 |
| 1992 | 인력부  | 2    |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의 의무 및 권한, 책임                       |
| 1995 | 인력부  | 4    | 산업안전보건 지원회사                                  |

| 제정년도 | 제정부처 | 규정번호    | 내용                                                                                   |
|------|------|---------|--------------------------------------------------------------------------------------|
| 1996 | 인력부  | 5       | 산업안전보건의 운영시스템                                                                        |
| 1998 | 인력부  | 3       | 사고조사 및 보고절차                                                                          |
| 1998 | 인력부  | 3       | 고문의사의 위임, 종료 및 업무절차                                                                  |
| 1999 | 인력부  | 3       |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
| 2010 | 인력부  | 8       | 작업장에서 제공하는 보호구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
| 1984 | 인력부  | 155     |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역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고문에 대한 조직, 구성, 업무절차                                |
| 1986 | 인력부  | 174/104 |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
| 1987 | 인력부  | 1135    | 산업안전보건 깃발                                                                            |
| 1989 | 인력부  | 333     | 직업질병 보고 및 분석                                                                         |
| 1990 | 인력부  | 245     | 산업안전보건 국립지정일                                                                         |
| 1999 | 인력부  | 51      | 작업장에서의 물리적요소의 한계값                                                                    |
| 1999 | 인력부  | 186     | 작업장의 화재예방                                                                            |
| 1999 | 인력부  | 187     |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운영                                                                       |
| 2002 | 인력부  | 75      | 작업장의 전기시설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대한 인도네시아 규격(Indonesian National Standard No. SNI-04-0255-2000) |
| 2004 | 인력부  | 68      | 작업장의 에이즈 감소 및 예방                                                                     |
| 1993 | 대통령  | 22      | 산업병                                                                                  |
| 1997 | 인력부  | 11      | 화재예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특별감독                                                            |
| 1984 | 노동감독 | 84      | 사고 분석 및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지침                                                                |
| 1999 | 노동감독 | 407     | 엘리베이터 기술자의 필요조건, 위임, 권리 및 의무                                                         |
| 2002 | 노동감독 | 311     | 전기기술자의 필요요건, 교육과정 등                                                                  |
| 2005 | 노동감독 | 20      | 작업장의 에이즈 감속 및 예방에 대한 기술이행안내서                                                         |
| 2010 | 노동감독 | 75      | 작업장의 에이즈 프로그램 안내서                                                                    |
| 2008 | 노동감독 | 53      | 작업장 응급구조요원의 훈련 및 자격 안내                                                               |



【붙임 3】

| 재해보고서 작성양식 |

|                                                                                                                         |               |                                                                                                            |            |
|-------------------------------------------------------------------------------------------------------------------------|---------------|------------------------------------------------------------------------------------------------------------|------------|
| Must be reported within 2x24 hours following accident                                                                   | FORM<br>KK 2A | KLUI NUMBER:<br>Accident Number:<br>Date of receipt:<br>(to be completed by officer of Manpower Ministry)* |            |
|                                                                                                                         |               | JAMSOSTEK Agenda Number:                                                                                   |            |
| 1. Company Name                                                                                                         |               | NPP                                                                                                        |            |
| Address and Phone Number                                                                                                |               | Postal code:                                                                                               | Phone no.: |
| Type of Business                                                                                                        |               |                                                                                                            |            |
| Worker Number                                                                                                           | M             | F                                                                                                          |            |
| Application Number<br>(in the form of KKI)                                                                              |               |                                                                                                            |            |
| Supervisor Number                                                                                                       |               |                                                                                                            |            |
| 2. Worker's Name                                                                                                        |               | KPA No.:                                                                                                   |            |
| Address and Phone Number                                                                                                |               | Postal code:                                                                                               | Phone no.: |
| Place and Date of Birth                                                                                                 |               |                                                                                                            |            |
| Type of Work/Position                                                                                                   |               |                                                                                                            |            |
| Unit/Division                                                                                                           |               |                                                                                                            |            |
| 3 a. Place of Accident                                                                                                  |               |                                                                                                            |            |
| b. Date of Accident                                                                                                     |               | Time:                                                                                                      |            |
| 4. Description of Accident                                                                                              |               | F**)<br>G**)                                                                                               |            |
| 1. How It Happened                                                                                                      |               |                                                                                                            |            |
| 2. Type of Work During Accident                                                                                         |               |                                                                                                            |            |
| 3. Witness of Accident                                                                                                  |               |                                                                                                            |            |
| 4a. List: machine, airplane, installation, processing tools, work technique, materials, or environment causing accident |               | H**)                                                                                                       |            |
| b. List: materials, process,                                                                                            |               | E**)                                                                                                       |            |

|                                                                                                                                          |               |             |         |
|------------------------------------------------------------------------------------------------------------------------------------------|---------------|-------------|---------|
| environment, work technique, or nature of work causing work-related illness                                                              |               |             |         |
| 5. Accident Results                                                                                                                      |               |             |         |
| a. Victim's loss                                                                                                                         | Death         | Sick        | Injured |
| b. Injured body part                                                                                                                     |               |             |         |
| c. Type of work-related illness                                                                                                          |               |             |         |
| - Position/Job<br>- Length of work                                                                                                       |               |             |         |
| d. Patient condition after first exam                                                                                                    |               |             |         |
| 1) Outpatient                                                                                                                            | While working | Not working |         |
| 2) Inpatient at:                                                                                                                         | Hospital      | Puskesmas   | Clinic  |
| Address:                                                                                                                                 |               |             |         |
| 6. Name and address of doctor/medical personnel who administers first aid (in work-related illness case, the doctor who first diagnosed) |               |             |         |
| 7. Events at work with safety and health hazards (ex: fire, explosion, collapse of construction, etc.)                                   |               |             |         |
| 8. Loss estimate<br>a. time (in days/person)<br>b. material                                                                              |               |             |         |
| 9. Wages                                                                                                                                 |               |             |         |
| a. Wage (base salary and compensation)                                                                                                   | Rp.           |             |         |
| b. Other compensation                                                                                                                    | Rp.           |             |         |
| c. Sum of a+b                                                                                                                            | Rp.           |             |         |

|                                                 |  |
|-------------------------------------------------|--|
| 10. Accident recorded in Accident Book Unit No. |  |
| 11. Other accident information                  |  |

\*) may be added as necessary

Truthfully completed

\_\_\_\_\_  
Name and signature of company's head

\_\_\_\_\_  
Position

\_\_\_\_\_  
Date

This accident report is sent to:

- White, red and pink copies to Kandep
- Local Manpower office
- Yellow copy for company's archives
- Green and blue copies to organizer/PT. JAMSOSTEK (Persero)
- (Persero Jamsostek)

Note:

Puskesmas=free public clinic

Jamsostek=organization protecting workers' rights

Established in Jakarta  
on February 26, 1998

MINISTER OF MANPOWER

signed

Drs. Abdul Latief



【붙임 3-1】

재해조사 및 평가 보고서  
ACCIDENT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REPORT

HEAD OF MANPOWER:

NO.:

HEAD OF DISTRICT:

KLUI:

---

I. PUBLIC DATA:

A. COMPANY IDENTITY

1. NAME OF COMPANY :
2. ADDRESS OF COMPANY :
3. ADDRESS OF MANAGER :

B. ACCIDENT INFORMATION

1. PLACE, DATE AND TIME OF ACCIDENT :
2. SOURCE OF REPORT :
3. DATE REPORT RECEIVED :
4. EXAMINATION DATE :
5. VICTIM'S DIRECT SUPERVISOR :
6. WITNESSES :

C. OTHERS

1. P2K3/K3 EXPERT : Present/Not\*)
2. KKB/PP : Present/Not\*)
3. Jamsostek Program : Present/Not\*)
4. SPSI Work Unit : Present/Not\*)
5. Other workers : Present/Not\*)
6. Other insurance : Present/Not\*)

II. VICTIM'S DATA

III. OBSERVED FACTS

1. Hazardous Condition

- a. \_\_\_\_\_
- b. \_\_\_\_\_
- c. \_\_\_\_\_
- d. \_\_\_\_\_



1. Quantity : \_\_\_\_ persons A  
 Male : \_\_\_\_ persons A1  
 Female : \_\_\_\_ persons A2  
 2. Name : a. \_\_\_\_\_ Age: \_\_\_\_ years ☐  
 b. \_\_\_\_\_ Age: \_\_\_\_ years ☐  
 c. \*)

3. Accident results:

- Death : \_\_\_\_ persons A4  
 Serious injury : \_\_\_\_ persons A5  
 Mild injury : \_\_\_\_ persons A6  
 No victim : \_\_\_\_ numbers of manhours lost  
 Total loss : Rp \_\_\_\_\_

4. Injured body parts

- a. \_\_\_\_\_ A  
 b. \*)  
 and so on

2. Hazardous Act

-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and so on

**IV. DESCRIPTION OF ACCIDENT**

\*) separate attachment, if needed

**V. SOURCE OF ACCIDENT**

**CODE C**

**VI. TYPE OF ACCIDENT**

**VII. CAUSE OF ACCIDENT**

**CODE D**

1. Hazardous Condition  
 2. Hazardous Act

**VIII. CONDITIONS GIVEN**

**CODE E**

**IX. FURTHER ACTION**

#### X. OTHERS TO BE REPORTED

1. Numbers of working hours/day :\_\_ hours
2. Numbers of manhours lost :\_\_ hours

Acknowledgement:

Head of Manpower Ministry Office

(.....)

Supervisor

(.....)

Established in Jakarta  
on February 26, 1998

MINISTER OF MANPOWER

signed

Drs. Abdul Latief

\*)cross out if not needed

【붙임 3-2】

직업관련질병조사 및 평가 보고서  
WORK-RELATED ILLNES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REPORT

HEAD OF MANPOWER:

NO.:

HEAD OF DISTRICT:

KLUI:

---

I. PUBLIC DATA:

A. COMPANY IDENTITY

1. NAME OF COMPANY :
2. ADDRESS OF COMPANY :
3. NAME OF MANAGER :
4. ADDRESS OF MANAGER :
5. TYPE OF COMPANY :

B. WORK-RELATED ILLNESS INFORMATION

1. PLACE AND DATE :
2. SOURCE OF REPORT :
3. DATE REPORT RECEIVED :
4. EXAMINATION DATE :
5. VICTIM'S DIRECT SUPERVISOR :
6. WITNESSES :

C. OTHERS

1. P2K3/K3 EXPERT : Present/Not\*)
2. KKB/PP : Present/Not\*)
3. Jamsostek Program : Present/Not\*)
4. SPSI Work Unit : Present/Not\*)
5. Other workers : Present/Not\*)
6. Other insurance : Present/Not\*)

II. VICTIM'S DATA

A. Identity : Code A

1. Name :
2. NTP :
3. Gender :
4. Position :

5. Unit/Division :
6. Length of Work :

B. Work History

C. Illness History

D. Health exam prior to work

1. Conducted/Not\*)
2. Abnormality observed

E. Routine health check-up

1. Conducted/Not\*)
2. Abnormality observed

F. Current health exam

1. Abnormality observed
  - Patient complaint :
  - Mental :
  - Physical :
  - Laboratory :
  - ECG :
  - Xray :
  - Anatomical pathology :

G. Additional exam/monitoring biology

Measurement of levels of illness-inducing chemicals in the body, such as levels in urine, blood, etc., and results of tests/exams of organs following exposure to chemicals, such as tests to check lungs functions, and others).

### III. OBSERVED FACTS

#### INVESTIGATION RESULTS OF WORKPLACE ENVIRONMENT AND WORK TECHNIQUE

1. Factors in workplace environment affecting victim's illness.
  - Physical factor :
  - Chemical factor :
  - Biological factor :
  - Psychological factor :



2. Factors in work technique affecting victim's illness.

- Working tools :
- Production processes :
- Ergonomic :

3. Efforts to control

- Personal Protective Device :
- Ventilation :
- Local air suction :

**IV. CONCLUSION**

The victim/worker described above suffers from a work-related illness.

Diagnosis:

**V. WORK-RELATED DISABILITY**

The illness described above causes/does not cause:

- a. Physical/mental disability\*) :
- b. Lost of ability to work :

**VI. FURTHER ACTION**

---

Acknowledgement:

Head of Manpower Ministry Office

Supervisor

(.....)

(.....)

Established in Jakarta  
on February 26, 1998

MINISTER OF MANPOWER

signed

Drs. Abdul Latie

\*)cross out if not needed

【붙임 3-3】

화재/폭발/폐수처리 설비 위험조사 및 평가 보고서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REPORT

HEAD OF MANPOWER:

NO.:

HEAD OF DISTRICT:

KLUI:

---

I. PUBLIC DATA:

A. COMPANY IDENTITY

- |                                  |   |                |
|----------------------------------|---|----------------|
| 1. Name of building/construction | : |                |
| 2. Type of business              | : |                |
| 3. Address                       | : |                |
| 4. Owner                         | : |                |
| 5. Manager                       | : |                |
| 6. Name of manager               | : |                |
| 7. Building construction data    |   |                |
| - Land area                      | : | m <sup>2</sup> |
| - Building area                  | : | m <sup>2</sup> |
| - Building:                      |   |                |
| · Main structure                 | : |                |
| · Floor                          | : |                |
| · Outside wall                   | : |                |
| · Inside wall                    | : |                |
| · Ceiling frame                  | : |                |
| · Ceiling closure                | : |                |
| · Roof frame                     | : |                |
| · Roof closure                   | : |                |
| - Building height                | : | meter          |
| - Number of floors               | : |                |
| - Total floor area               | : | m <sup>2</sup> |
| - Built in the year of           | : |                |
| - Details floor plan             |   |                |



- d. Number/date of exam note:  
 e. Conditions given:  
 (attach copy of supervisor's document)

## II. VICTIM'S DATA

1. Quantity : \_\_\_\_ persons A  
     Male : \_\_\_\_ persons A1  
     Female : \_\_\_\_ persons A2
2. Name : a. \_\_\_\_\_ Age: \_\_\_\_ years ☐  
             b. \_\_\_\_\_ Age: \_\_\_\_ years ☐  
             c. \*)
3. Accident results:  
     Death : \_\_\_\_ persons A4  
     Serious injury : \_\_\_\_ persons A5  
     Mild injury : \_\_\_\_ persons A6  
     No victim : \_\_\_\_ numbers of manhours lost  
     Total loss : Rp \_\_\_\_\_
4. Injured body parts  
     a. \_\_\_\_\_ A  
     b. \*)
5. Others  
     a. Material loss  
         · Building : Rp  
         · Tools : Rp  
         · Materials : Rp  
         · Others : Rp  
         TOTAL : Rp  
     b. Fire results  
         · Burnt building segments  
         · Damaged tools  
         · Time it takes to rehabilitate  
         · Problems with worker relations



### III. OBSERVED FACTS

(The process of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1. Hazardous condition

a.

b.

c.

and so on

2. Hazardous act

a.

b.

c.

and so on

3. Hazardous process

4. Function of existing fire protection facility

### IV. DESCRIPTION OF ACCIDENT

(Description of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1. Place/starting location

2. Last known activity at starting location

3. Observed signs

4. Immediate action upon discovering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5. Incoming assistance

6. Workplace sketch

(Mark the location where fire starts, burnt and unburnt sections; use extra sheet if needed)

7. Sketch of starting location of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8. Diagram of accident process

(If needed, include a detailed drawing of the tools suspected of starting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 V. SOURCE OF ACCIDENT

(Main source of fire/explosion/waste disposal hazard\*)

Code B

Electric current, open fire, chemical reaction, welding, burning fire splatter, mechanical fire splatter, spontaneous ignition, lightning, radiation exposure, overheating, hot surface, static electricity, trash burning, and others.

## VI. Type of accident

(Chronological explanation on human victim)

Code C

## VII. Type of accident

(Main reason for human victim)

1. Hazardous condition

Code D

2. Hazardous act

Code E

## VIII. CONDITIONS GIVEN

(Efforts to avoid accidents, reduce risks, and fire protection facility, and others)

## IX. FURTHER ACTIONS

## X. OTHERS TO BE REPORTED

(Steps taken by the company)

Established in Jakarta

on February 26, 1998

MINISTER OF MANPOWER

signed

Drs. Abdul Latief

\*)cross out if not needed

【붙임 4】

인도네시아 SNI 통관강제 대상품목

| Commodity                                                | SNI                          | No.                                                                                                                                                                                                                                                                                                                                                                                          |
|----------------------------------------------------------|------------------------------|----------------------------------------------------------------------------------------------------------------------------------------------------------------------------------------------------------------------------------------------------------------------------------------------------------------------------------------------------------------------------------------------|
| <i>Vertical Cylinder Water Tanks - Polyethylene (PE)</i> | <i>SNI 7276:2008</i>         | <i>3925.10.00.00</i>                                                                                                                                                                                                                                                                                                                                                                         |
| <i>Glazed Ceramic, Tableware</i>                         | <i>SNI 7275:2008</i>         | <i>6911.10.00.00</i><br><i>6911.90.00.00</i><br><i>6912.00.00.00</i>                                                                                                                                                                                                                                                                                                                         |
| <i>Closets</i>                                           | <i>SNI 03-0797-2006</i>      | <i>6910.10.00.00</i><br><i>6910.90.00.00</i>                                                                                                                                                                                                                                                                                                                                                 |
| <i>Ceramic Tiles</i>                                     | <i>SNI 13006:2010</i>        | <i>6907.10.00.00</i><br><i>6907.90.00.00</i><br><i>6908.10.10.00</i><br><i>6908.90.10.00</i><br><i>6908.90.90.00</i>                                                                                                                                                                                                                                                                         |
| <i>2-Wheel Bicycle</i>                                   | <i>SNI 1049:2008</i>         | <i>8712.00.10.00</i><br><i>8712.00.30.00</i><br><i>8712.00.90.00</i>                                                                                                                                                                                                                                                                                                                         |
| <i>Gas Lighter</i>                                       | <i>SNI 19-7120-2005</i>      | <i>9613.10.10.00</i><br><i>9613.10.90.00</i><br><i>9613.20.10.00</i><br><i>9613.20.90.00</i><br><i>9613.80.20.00</i><br><i>9613.80.30.00</i><br><i>9613.80.90.00</i>                                                                                                                                                                                                                         |
| <i>Water Pump</i>                                        | <i>SNI 04-6292.2.41-2003</i> | <i>8413.70.22.00</i><br><i>8413.70.29.00</i>                                                                                                                                                                                                                                                                                                                                                 |
| <i>Electrical Iron</i>                                   | <i>SNI 04-6292.2.3-2003</i>  | <i>8516.40.90.00</i>                                                                                                                                                                                                                                                                                                                                                                         |
| <i>TV CRT (Catode Retube Television)</i>                 | <i>SNI 04-6253-2003</i>      | <i>8540.11.00.00</i>                                                                                                                                                                                                                                                                                                                                                                         |
| <i>Cold Rolled Steel</i>                                 | <i>SNI 07-3567-2006</i>      | <i>7209.15.00.00</i><br><i>7209.16.00.10</i><br><i>7209.16.00.90</i><br><i>7209.17.00.10</i><br><i>7209.17.00.90</i><br><i>7209.18.20.00</i><br><i>7209.18.90.00</i><br><i>7209.25.00.00</i><br><i>7209.26.00.10</i><br><i>7209.26.00.90</i><br><i>7209.27.00.10</i><br><i>7209.27.00.90</i><br><i>7209.28.10.00</i><br><i>7209.28.90.00</i><br><i>7209.90.90.00</i><br><i>7211.23.20.00</i> |



|                                                                                                   |                                                                                                                                               |                                                                                                                                                       |
|---------------------------------------------------------------------------------------------------|-----------------------------------------------------------------------------------------------------------------------------------------------|-------------------------------------------------------------------------------------------------------------------------------------------------------|
|                                                                                                   |                                                                                                                                               | 7211.23.30.00<br>7211.23.90.10<br>7211.23.90.90<br>7211.29.20.00<br>7211.29.30.00<br>7211.29.90.00<br>7211.90.10.00<br>7211.90.30.00<br>7211.90.90.00 |
| <i>Sheet Glass</i>                                                                                | <i>SNI 15-0047-2005</i>                                                                                                                       | 7003.12.20.00<br>7003.12.90.00<br>7003.19.90.00<br>7004.20.90.00<br>7004.90.90.00<br>7005.10.90.00<br>7005.21.90.00<br>7005.29.90.00                  |
| <i>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i>                                                          | <i>SNI 04-6956.1-2003</i><br><i>SNI 04-6956.2.1-2005</i>                                                                                      | <i>8536.30.00.00</i>                                                                                                                                  |
| <i>Luminaires</i>                                                                                 | <i>SNI 04-6973.1-2005</i><br><i>SNI 04-6973.2.2-2005</i><br><i>SNI 04-6973.2.3-2005</i><br><i>SNI 04-6973.2.5-2005</i>                        | <i>8539.90.90.00</i>                                                                                                                                  |
| <i>Lamp Controlgears</i>                                                                          | <i>SNI 04-6959.1-2003</i><br><i>SNI 04-6959.2.3-2003</i>                                                                                      | <i>8504.23.39.00</i>                                                                                                                                  |
| <i>Melamine Products – food and drink appliances</i>                                              | <i>SNI 7322-2008</i>                                                                                                                          | <i>3924.10.00.00</i>                                                                                                                                  |
| <i>Cable Products</i>                                                                             | <i>SNI 04-7183.2-2006</i><br><i>SNI 04-6629.2-2006</i><br><i>SNI 04-6629.3-2006</i><br><i>SNI 04-6629.4-2006</i><br><i>SNI 04-6629.5-2006</i> | 9001.10.10.00<br>8544.11.30.00                                                                                                                        |
|                                                                                                   |                                                                                                                                               |                                                                                                                                                       |
| Leather safety shoes with vulcanized rubber soles print                                           | SNI-12-0111-2009                                                                                                                              | 6403.40.00.00                                                                                                                                         |
| Leather safety shoes with goodyear welt system                                                    | SNI-12-7037-2009                                                                                                                              |                                                                                                                                                       |
| Leather safety shoes with injected print system polyurethane and thermoplastic polyurethane soles | SNI-12-7079-2009                                                                                                                              |                                                                                                                                                       |
| Cocoa powder                                                                                      | SNI-01-3747-1995                                                                                                                              | 1805.00.00.00                                                                                                                                         |
| Eating and drinking melamine utensils                                                             | SNI 7322-2008                                                                                                                                 | 3924.10.00.00                                                                                                                                         |
| Aluminum-zinc alloy Metal sheet and roll                                                          | SNI 4096-2007                                                                                                                                 | 7210.61.10.00                                                                                                                                         |
|                                                                                                   |                                                                                                                                               | 7210.61.90.00                                                                                                                                         |
|                                                                                                   |                                                                                                                                               | 7210.70.10.00                                                                                                                                         |
|                                                                                                   |                                                                                                                                               | 7210.70.90.00                                                                                                                                         |



|                                                                   |                                          |               |
|-------------------------------------------------------------------|------------------------------------------|---------------|
|                                                                   |                                          | 7212.50.10.10 |
|                                                                   |                                          | 7212.50.20.10 |
| Primary battery: General<br>Prim. Batt.: Physical and electricity | SNI-04-2051.1-2004<br>SNI-04-2051.2-2004 | 8506.10.10.00 |
|                                                                   |                                          | 8506.10.90.00 |
|                                                                   |                                          | 8506.50.00.00 |
|                                                                   |                                          | 8506.80.10.00 |
|                                                                   |                                          | 8506.80.20.00 |
| Steel sheets, plates, and hot-rolled                              | SNI-07-0601-2006                         | 7208.25.10.00 |
|                                                                   |                                          | 7208.25.90.00 |
|                                                                   |                                          | 7208.26.00.00 |
|                                                                   |                                          | 7208.27.00.00 |
|                                                                   |                                          | 7280.36.00.00 |
|                                                                   |                                          | 7208.37.00.00 |
|                                                                   |                                          | 7208.38.00.00 |
|                                                                   |                                          | 7208.39.00.00 |
|                                                                   |                                          | 7208.51.00.00 |
|                                                                   |                                          | 7208.52.00.00 |
|                                                                   |                                          | 7208.53.00.00 |
|                                                                   |                                          | 7208.54.00.00 |
|                                                                   |                                          | 7208.90.00.00 |
|                                                                   |                                          | 7211.13.10.00 |
|                                                                   |                                          | 7211.13.90.00 |
| Steel sheets, plates, and hot-rolled                              | SNI-07-0601-2006                         | 7211.14.10.00 |
|                                                                   |                                          | 7211.14.90.00 |
|                                                                   |                                          | 7211.19.10.00 |
|                                                                   |                                          | 7211.19.90.00 |
|                                                                   |                                          |               |
| Packaged drinking water                                           | SNI-01-3553-2006                         |               |
| Urea fertilizer                                                   | SNI-02-2801-1998                         | 3102.10.00.00 |
| Super Phosphates (SP-36)                                          | SNI-02-3769-2005                         | 3103.10.90.00 |
| Refined sugar crystal                                             | SNI-01-3140.2-2006                       | 1701.99.11.00 |
|                                                                   |                                          | 1701.99.19.00 |
| Helmet for motorcyclist                                           | SNI-1811-2007                            | 6506.10.10.00 |
| Wheat Flour                                                       | SNI-01-3751-2006                         | 1101.00.10.00 |
| Fluorescent / ballast Lamps                                       | SNI-04-6504-2001                         | 8539.31.90.90 |
| Ammonium Sulphate Fertilizer (ZA)                                 | SNI-02-1760-2005                         | 3102.21.00.00 |
| Triple Super Phosphate/TSP Fertilizer                             | SNI-02-0086-2005                         | 3103.10.00.00 |
| Triple Super Phosphate plus Zn Fertilizer                         | SNI-02-2800-1992                         | 3103.10.00.00 |
| Compact NPK Fertilizer                                            | SNI-02-2803-2000                         | 3105.20.00.00 |
| Ammonium Chloride Fertilizer                                      | SNI-02-2581-1992                         | 2827.10.00.00 |
| Dolomite Fertilizer                                               | SNI-02-2804-1992                         | 2518.10.00.00 |
| Potassium Chloride Fertilizer/ Muriate of Potash/MOP              | SNI-02-2805-2005                         | 3104.20.00.00 |
| Mono Ammonium Phosphate Fertilizer / MAP                          | SNI-02-2810-1992                         | 3105.40.00.00 |
| Urea Ammonium Phosphate Fertilizer / UAP                          | SNI-02-2811-1992                         | 3105.40.00.00 |
| Diammonium Phosphate Fertilizer / DAP                             | SNI-02-2858-1992                         | 3105.30.00.00 |
| Super Phosphate Fertilizer -36/SP-36                              | SNI-02-3769-1995                         | 3103.10.00.00 |



|                                                               |                       |                                                                                   |
|---------------------------------------------------------------|-----------------------|-----------------------------------------------------------------------------------|
| Organic Phosphate Fertilizer for agriculture / Rock Phosphate | SNI-02-3776-2006      | 3103.90.90.00                                                                     |
| SP-36 Plus Zn Fertilizer                                      | SNI-02-4873-1998      | 3103.10.00.00                                                                     |
| Borate Fertilizer                                             | SNI-02-4959-1999      | 2810.00.00.00                                                                     |
| Liquid Residual Amino Acid Fertilizer (Sipramin)              | SNI-02-4958-1999      | 3105.90.00.00                                                                     |
| Passenger Car Tire                                            | SNI-06-0098-2002      | 4011.10.00.00                                                                     |
| Truck and Bus Tire                                            | SNI-06-0099-2002      | 4011.20.10.00                                                                     |
| Light Truck Tire                                              | SNI-06-0100-2002      | 4011.10.00.00                                                                     |
| Motorcycle Tire                                               | SNI-06-0101-2002      | 4011.40.00.00                                                                     |
| Vehicle Inner tube                                            | SNI-06-6700-2002      | 4013.10.11.00                                                                     |
| Electronic AC Switches                                        | SNI-04-6203.1-2001    | 8536.50.61.00                                                                     |
| Plugs and Sockets                                             | SNI-04-3892.1-2001    | 8536.69.91.00                                                                     |
| M C B                                                         | SNI-04-6507.1-2002    | 8536.20.00.00                                                                     |
| Fans                                                          | SNI-04-6292.2.80-2003 | 8414.51.00.00                                                                     |
| White Portland Cement                                         | SNI-15-0129-2004      | 2523.21.00.00                                                                     |
| Pozolan (fly ash) Portland Cement                             | SNI-15-0302-2004      | 2523.29.90.00                                                                     |
| Portland Cement                                               | SNI-15-2049-2004      | 2523.29.10.00                                                                     |
| Mixed Portland Cement                                         | SNI-15-3500-2004      | 2523.29.29.00                                                                     |
| Masonry Cement                                                | SNI-15-3758-2004      | 2523.90.00.00                                                                     |
| Composite Portland Cement                                     | SNI-15-7064-2004      | 2523.90.00.00                                                                     |
| Toughened (tempered) safety glass                             | SNI-15-0048-2005      | 7007.11.10.00                                                                     |
| Laminated safety glass                                        | SNI-15-1326-2005      | 7007.11.10.00                                                                     |
| LPG Steel Cylinder                                            | SNI-1452-2007         | 7311.00.91.00<br>7311.00.99.00                                                    |
| LPG Steel Cylinder Valve                                      | SNI-1591-2008         | 8481.80.21.00                                                                     |
| Single Burner of Stove Gas Fuel                               | SNI-7368-2007         | 7321.11.00.00<br>7321.81.00.00<br>7321.90.90.00                                   |
| Low Pressure Regulator of Stove                               | SNI-7369-2008         |                                                                                   |
| Gas Stove Hose                                                | SNI-06-7213-2006      | 4009.11.00.00<br>4009.12.00.00                                                    |
| Concrete Reinforced Steel                                     | SNI-07-2052-2002      | 7214.20.11.00<br>7214.20.19.00<br>7214.20.21.00<br>7214.20.29.00<br>7214.20.00.00 |
| Hot Rolled Concrete Reinforced Steel                          | SNI-07-0065-2002      | 7214.99.10.10<br>7214.99.10.90<br>7214.99.90.10<br>7214.99.90.90                  |
| Coil Concrete Reinforced Steel                                | SNI 07-0954-2005      | 7213.10.00.00<br>7213.10.00.90<br>7213.91.00.00<br>7213.99.00.00                  |

|                       |                  |               |
|-----------------------|------------------|---------------|
| Zinc Galvanized Steel | SNI 07-2053-2006 | 7210.41.10.00 |
|                       |                  | 7210.41.20.00 |
|                       |                  | 7210.41.90.00 |
|                       |                  | 7210.49.10.00 |
|                       |                  | 7210.49.20.00 |
|                       |                  | 7210.49.90.00 |
|                       |                  | 7212.30.10.00 |
|                       |                  | 7212.30.20.00 |
|                       |                  | 7212.30.90.00 |

주: 이태릭체는 추가예정인 품목

**【붙임 5】**

**보호구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제 PER-08/MEN/VII/2010호(2010.7.6)**

**1장 정의**

1. “개인보호장치(약칭 PPD, 인도네시아어 APD)”란 작업현장에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하기위한 기능으로써 보호성능을 가진 장치
2. “기업주”란
  - a. 그들 자신의 회사를 보유한 개인, 연맹 또는 법인
  - b.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연맹 또는 법인
  - c. a 또는 b의 형태로 외국회사의 대표자로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연맹, 법인을 말함
3. “매니저”란 독립부서 또는 작업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책임을 가진자를 말한다
4. “작업현장”이란 작업현장과 관련된 일부의 주변지역과 야드, 현장 및 모든 방을 포함하여 위험의 근원지가 있는 곳 또는 근로자가 종종 출입하는 곳 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곳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움직이는 개방된 장소, 밀폐된 장소 또는 방을 말한다.
5. “인력감독고용인”이란 법에 서술된 바에 따라 인력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시민고용인으로 임명된자로 감독관리자를 의미한다.
6. “작업현장 안전보건 전문가”란 인력이주부 외부인으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근로자로 인력이주부에서 임명한자를 말한다.

**2장**

- (1) 기업주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PPD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2) PPD는 인도네시아 국가규격(SNI) 또는 적용가능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장**

- (1) 2장에서 명시하는 PPD는 다음과 같다
  - a. 머리 보호구
  - b. 눈 및 안면 보호구
  - c. 방음 보호구
  - d. 호흡 보호구 및 부속품
  - e. 손 보호구
  - f. 발 보호구
- (2) (1)에서 명시된 것 이외 아래도 포함된다

- a. 보호복
  - b. 개인 추락방지 보호구
  - c. 부유물
- (3) (1) 및 (2)에 명시된 PPD의 형태와 기능은 장관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 4장

(1) PPD는 다음 작업장소에 사용하여야 한다.

- a. 엔진, 비행기 또는 공구등을 제조, 시험 또는 사용하거나 사고, 화재 또는 폭발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장소
- b. 가연성, 폭발, 부식, 독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품목을 고온 또는 저온에서 제조, 가공, 사용, 운송, 무역, 저장하는 경우
- c. 지하터널, 하수시설, 관개시설을 포함한 집, 건물 또는 다른 건축물을 짓거나, 변경하거나. 유지하거나. 청소하거나, 부수거나 만드는 곳
- d. 농장, 조림지, 숲에 통로개설, 숲제거, 목가공 또는 숲과 관련된 제품, 동물농장, 낚시와 관련된 가공을 하는 장소 및 헬쓰장 운영 장소
- e. 광산, 석가공, 가스, 오일, 지열 또는 미네랄등 땅 내부 또는 표면에서 및 물아래에서 운영되는 장소
- f. 품목, 동물 또는 인간을 땅에서 운송하거나 터널을 통하거나 물 위 또는 물 아래 또는 대기중에 운반하는 장소
- g. 화물을 배, 요트, 항구, 독크, 역, 공항 또는 저장창고에서 올리거나 하역하는 장소
- h. 다이빙, 생명보호장치 또는 잠수상태에서의 작업
- I. 지면 또는 수면위의 높은 장소에 행하는 작업
- J. 고온, 저온 또는 대기압아래에서 행하는 작업
- k. 미끄러짐, 넘어짐, 크게넘어짐, 붕괴, 익사, 또는 걸러넘어짐 등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서 행하는 작업
- l. 작은 방, 탱크, 우물 또는 구멍에서 행하는 작업
- m. 온도변화가 심한곳, 습기, 먼지, 지꺼기, 화재, 연기, 기체, 바람, 극심한 기후, 방사선, 광선, 소음 및 진동이 있는 장소
- n.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파괴하는 곳
- o. 라디오 주파수, 레이다. TV 또는 전화주파수를 널리 전파하거나 수발신하는 곳
- p. 기술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가르키거나 시험하거나 조사하는 곳
- q. 전기, 가스, 오일 및 물을 생산, 변화, 축적, 저장, 분배 또는 전달하는 곳
- r. 전기 또는 기계 설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재창조적인 활동을 행하는 곳

- (2) 인력감독관 또는 작업현장 안전보건 전문가는 (1)에 명시된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작업장 현장에서 PPD가 사용하는지 의무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5장

기업주 또는 매니저는 의무적으로 PPD의 사용방법을 서면으로 작업현장에 발표하거나 포스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 6장

- (1) 근로자와 작업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잠재적인 위험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PPD를 착용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는 제공된 PPD가 필요조건 및 규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을 반대할 자격을 가진다.

## 7장

- (1) 기업주 또는 매니저는 작업현장에서 PPD운영을 실행하여야 한다.
- (2) PPD운영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a. PPD에 대한 고유인식표 및 필요요건
  - b.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필요성 및 위험형태를 고려한 PPD의 선택
  - c. 훈련
  - d. 사용, 유지 및 보관
  - e. 폐기 또는 제거방법
  - f. 개발
  - g. 검사
  - h. 평가 및 보고

## 8장

- (1) PPD가 손상되었거나 금이가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 반드시 폐기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 (2) 다른 위험물질을 포함한 PPD가 만료일에 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3) 다른 위험물질을 포함한 PPD의 파기는 파기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 9장

기업주 또는 매니저가 2장, 4장 및 5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1970년 법률 1항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10장

인력감독관은 장관규칙에 의거해서 부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 【부속서】

### PPD의 기능과 형태

#### 1. 머리 보호구

##### 1.1 기능

머리 보호구는 뜨거운 방사선, 화재, 화학물질 분사, 미생물 및 극한 온도에 노출되거나, 대기를 통과하거나 떠다니는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의 낙하에 의해 충격을 가해지는 것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1.2 형태

머리 보호구의 형태는 안전모, 안전모자, 머리 보호구, 스카프, 핀 등임

#### 2. 눈 및 안면 보호구

##### 2.1 기능

눈 및 안면 보호구는 위험한 화학물질, 입자, 대기중의 부유물질, 작은 물질의 흩날림, 뜨거운 스팀, 비전리 및 전리 방사선, 빛의 노출로부터 눈 및 안면을 보호하거나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질의 충격으로부터 눈 및 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2.2 형태

눈 및 안면보호구의 형태는 안경, 고글, 보안면, 다이빙 마스크 및 전면 마스크임

#### 3. 방음보호구

##### 3.1 기능

방음보호구는 소음 또는 압력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3.2 형태

방음보호구의 형태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음

#### 4. 호흡보호구 및 부속품

##### 4.1 기능

호흡보호구 및 부속품은 화학오염물, 미생물, 먼지입자, 에어로졸, 스팀, 가스, 흙 등을 걸러내어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를 전달함으로써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4.2 형태

호흡보호구 및 부속품의 형태는 마스크, 호흡발생기, 재호흡기, 공기호흡기,

캐니스터, 연속적인 공기 공급장치, 호스용 공기마스크 장치, 다이빙 탱크 및 조절기(잠수기에 포함된 호흡장치), 자가호흡장치 및 비상호흡장치 임

## 5. 손 보호구

### 5.1 기능

손 보호구는 화재, 고온, 저온, 전기자기장 방사선, 전리 방사선, 전류, 화학물질, 충격, 스크래치, 병원세균 및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손가락 및 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5.2 형태

손 보호구의 형태는 금속, 가죽, 캔버스, 천 또는 겹친 천, 고무로 만들어진 장갑 및 항화학적 장갑임

## 6. 발 보호구

### 6.1 기능

발 보호구는 차갑거나 뜨거운 액체에 의한 미끄러짐, 뜨거운 스팀, 극한 온도의 노출, 위험한 화학물질, 미생물 및 전도, 무거운 물질에 의한 충격 날카로운 물질에 의한 관통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6.2 형태

발 보호구의 형태는 드릴, 금속 주물, 산업, 건설, 폭발 또는 전기적 위험요소를 가진 작업, 젖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작업현장 또는 화학물질, 미생물 또는 동물 등의 위험형태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신발임

## 7. 보호복

### 7.1 기능

보호복은 극한온도, 뜨거운 물질, 화학물질의 흘날림, 뜨거운 금속 및 액체, 뜨거운 스팀으로부터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하거나 기계의 충격, 도구 및 물질, 스크래치, 방사선, 동물, 미생물, 인간/동물/식물로부터 병원세균 및 바이러스, 박테리아/사상균과 같은 환경으로부터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 7.2 형태

보호복의 형태는 슈트, 에이프런/작업복, 자켓 및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하는 보호기능을 갖는 옷임

## 8. 개인추락방지 보호구





### 8.1 기능

개인추락보호구의 기능은 잠재적인 추락장소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이동성 제한하고 요구되어지는 작업 위치에서 비스듬하게 또는 매달린 상태로 작업자를 유지하는 보호구로 떨어질 때 바닥의 충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 8.2 형태

개인추락보호구의 형태는 안전그네식, 카라비니아, 그네식 안전대, 안전로프, 안전클램프, 이동식 추락 방지장치 등임

## 9. 부유물

### 9.1 기능

부유물을 조정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속에서 유지되거나 중간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익사를 피하기 위하여 수면 아래 또는 수면에서 작업하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임

### 9.2 형태

부유물의 형태는 라이프 자켓, 라이프 슈트 및 부유물 조정장치임

【붙임 6】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제 PER-05/MEN/1996호

- 주요 고려사항 a. 작업장 내 대부분의 사고는 주로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단지 소수에 불과
- b. 작업장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생산 원료 공급과정 및 생산공정과 작업환경에 참여하는 여타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 c. 무역 세계화 시대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기술적 제약 요인에 부딪칠 수 있음
- d.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장관시행령으로 결의

- 주요 근거 1. 1945년 헌법 제4조 (1)항
2. 1969년 이주인력부에 관한 법 제14호 관련 조항(1969년 관보 제55호-관보 제2912호의 증보판)
3. 1970년 안전에 관한 법 제1호(관보제 1호 - 관보 제1918호의 증보판)

제1장 일반 결정 사항

제1조

본 시행령에 적용되는 용어 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은 안전 및 보건관리 시스템으로 지칭되는, 직무상의 위험을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작업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 시 안전보건 원칙을 개발, 시행, 달성 및 평가를 필요로 하는 조직 구조, 계획, 담당 책임, 시행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포함하는 총체적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 (2) **작업장**은 인도네시아 관할 지역 내의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또는 영공에 위험물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종 출입하는 개방 또는 폐쇄, 그리고 이동 또는 정지 상태의 모든 실내 내지 작업 현장을 가리킨다.
- (3) **감사**는 회사의 주요 방침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업무 활동 및 관련 결과가 사전 수립된 규정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검증 과정을 의미한다.

- (4) **회사**는 이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또는 국가가 소유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 (5) **이사**는 1970년 법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 간부를 가리킨다.
- (6) **고용 심사관**은 인력부 장관이 임명하며 인력부 내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실무 담당관을 가리킨다.
- (7) **기업가**는 다음 제반 당사자를 의미한다:
  - a. 자기 자신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b.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c. 상기 a 또는 b 조항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인도네시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나타낸다.
- (8) **경영자**는 독립적인 작업장 또는 현장을 선두에서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 받은 당사자를 의미한다.
- (9) **근로자**는 근로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키 위한 재화 또는 용역 생산 과정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개별 당사자를 의미한다.
- (10) **감사 보고서**는 작업장에 대한 감사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제반 감사 결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감사 기관 발행 보고서를 의미하는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성과 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 보고서가 요구된다.
- (11) **인증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규정 시행 인증서를 의미한다.
- (12) **장관**은 고용 관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을 의미한다.

## 제2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주요 목적 및 목표

### 제2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요 목적 및 목표는 작업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을 감축 및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작업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영자 및 근로자의 참여와 제반 작업 조건 및 환경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있다.

## 제3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 제3조

- (1)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폭발, 화재, 오염 및 질병 등과 같은 재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자재 특성상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모든 회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2) 상기 (1) 항에 명기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경영자, 기업가, 및 모든 근로자가 서로 혼연일체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제4조

- (1) 회사는 상기 3조에 명기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제반 지침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
  - a.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수립·확정하여 동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b. 관리 시행의 원칙, 목적 및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내부 체제 정비
  - c. 안전보건 경영 원칙, 목적 및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요 메커니즘을 개발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
  - d. 안전보건 경영 성과를 측정, 통제 및 평가하는 동시에, 그 개선 및 예방 대책 실천
  - e. 안전보건 성과의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시스템 시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함
- (2) 상기 (1) 항에 명기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지침은 본 장관 시행령의 부록 I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제4장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 제5조

-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상기 4조에 제시된 세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바, 회사는 장관이 지정한 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상기 (1)항에 명기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과정에는 다음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 실천 서약서 작성 및 보관
  - b. 문서 관리 전략
  - c. 설계 및 계약 내용 검토
  - d. 문서 통제
  - e. 조달

- f.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기초한 안전 대책
  - g. 감독 기준
  - h. 제반 불비사항 보고 및 시정
  - i. 주요 자재 관리 및 이동
  - j.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k. 관리 시스템 검사
  - l. 기술 및 전문 지식 확보
- (3) 상기 (2)항에 제시된 상황에 의한 요소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장관이 조정 관리한다.
- (4) 상기 (2)항에 제시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업무와 관련된 실무 지침은 본 장관 시행령의 부록 II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제5장 이사의 권한

### 제6조

이사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회사가 감사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제6장 감사 시행 방법

### 제7조

-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는 매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2) 감사 기관은 동 감사 수행 시 다음 제반 사항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
  - a. 연간 감사 계획 수립
  - b. 장관 또는 감사 담당관, 감사 대상 작업장 내 운영 위원회 및 인력부 지역 사무소 (Kanwil) 앞으로 연간 감사 계획 제출
  - c. 인력부 지역 사무소 (Kanwil) 측과 상호 업무 조정
- (3) 감사 대상 작업장의 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과정에 요구되는 제 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제8조

- (1) 감사 기관은 최종 완성된 감사 보고서를 이사 앞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사본 1부는 감사 대상 작업장 내 운영 위원회 앞으로 전달한다.
- (2) 상기 (1)항에 명기된 최종 완성 감사 보고서는 본 장관 시행령 부록 III에 제시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3) 이사는 상기 (2)항에 명기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작업을 실시한다.
- (4) 이사는 상기 (3)항에 명기된 평가 및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한다:

- a. 성과 달성 수준에 상응하는 인증서 제공 및 보상성 배너 게시 또는
- b. 담당 조사관으로 하여금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시행토록 지시

## 제7장 보건안전 인증서

### 제9조

- (1) 상기 (4)항 a목에 명시된 장관이 서명한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다.
- (2) 상기 (1)항에 명기된 인증서 및 보상성 배너 유형은 본 장관 시행령의 부록 IV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 제8장 지원 및 통제

### 제10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과정에 대한 지원 및 통제 업무는 장관 또는 지정 담당관이 수행한다.

## 제9장 비용 부담

### 제11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검 회사 측에서 부담한다.

## 제10장 결론

### 제12조

본 장관 시행령은 공식 제정 시행된 날로부터 공식 효력을 발휘한다.

1996년 12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인력부 장관 Drs. Abdul Latief 에 의해 공식 제정 시행됨

1996년 12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인력부 장관

Drs. Abdul Latief 에 의해 공식 제정 시행됨

## 부록 I : 인력부 장관 시행령

공포 번호 : 제PER-05/MEN/1996호

공포일: 1996년 12월 12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행지침

#### I. 실천의지 및 정책

##### 1.1 지도력 및 실천의지

회사 이사회는 다음 제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도력 및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a. 안전보건 경영조직에 대하여 의사결정 역량 부여
- b. 안전보건을 위해 적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와 예산 및 여타 시설 배정
- c. 안전보건경영 시행과정에 직무분야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동시에 적정 권한과 책임을 갖춘 전문 인원 선발 배치
- d. 안전보건경영 계획 조율
- e. 안전보건경영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 및 후속관리 업무 수행

상기 실천의지 및 정책수립운영과정은 정기적으로 재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 및 작업장 내의 종사자는 상시적 안전보건경영 및 통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1.2 안전보건경영상태에 대한 최초 검토

회사는 다음 제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상태에 대한 최초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a. 본 지침과 입수 및 확인 가능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 자료간의 상호 비교
- b. 회사 주요 업무 활동과 관련된 제반 위험 요소 확인 안전보건경영 관리 기준 및 규정에 대한 이행 정도 및 인식 수준 평가
- c. 안전보건 경영 기준 및 규정에 대한 이행정도 및 인식 수준평가
- d. 안전보건 경영 실천 모범 사례 회사/부문과의 상호 비교
- e. 위험한 사고 발생원인 및 그에 따른 파급 효과 관찰, 상벌체계 운영 그리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의 상호 연관성 평가
- f. 가용 자원의 효율성 및 유효성 평가

이 최초 평가결과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개발 및 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한다.

### 1.3. 안전보건경영 정책

안전보건경영정책은 회사의 일반 및 운영 관련 업무 수행 활동을 포함하는, 회사의 장기 비전과 목적,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의지, 그리고 관련 직무 프로그램 및 참조 기준 등 일체의 내용에 대해 기업가 및/또는 회사 이사회에서 서명한 서약서의 일종이다.

회사 및 근로자 대표는 상호 논의 과정을 통해 이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작성한 후, 모든 근로자와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이 정책 내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경영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향상·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항상 재검토해야 한다.

## II. 계획 수립

회사는 명확한 목적과 측정 가능한 방법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및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 수립 내용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상태에 대한 최초 검토 결과와 적정 규정 제정 과정 이후 진행되는 제반 위험 요소 확인, 평가 및 위험 통제 방식으로 시행될 제반 목표, 목적 및 성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2.1. 위험 요소 확인, 평가 및 위험 통제 관련 계획 수립

안전보건경영 정책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는 주요 업무 수행 활동, 관련 자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위험 요소 확인, 평가 및 위험 통제 절차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야 하는 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상시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2.2. 규정 및 여타 조건

회사는 업무 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보건안전 관련 규정과 여타 조건에 대한 식별 및 인식 절차를 확인하고, 상시 유지·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 이사회는 상기 규정 및 여타 조건을 모든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2.3. 목적 및 목표

회사가 결정하는 안전보건경영정책의 목적 및 목표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a. 측정 가능성
- b. 단위/측정지표



- c. 달성 목적
- d. 달성 기한

안전보건경영 정책상의 주요 목표 및 목적 결정 시에는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전문가, P2 안전/보건 및 여타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기 목표 및 목적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 발생 후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 2.4. 성과 지표

회사는 안전보건 경영 정책상의 주요 목표 및 목적 결정 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성과 달성 관련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 2.5. 최초 계획 및 상시적 활동 계획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성공적인 최초 시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상의 주요 목표 및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 a. 회사의 주요 직무분야 및 경영관리 수준에 적합한 주요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시스템 수립 운용
- b. 목표 및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시설 및 시간 확인

### III. 시행

회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시스템에 대해 적정 자적 요건을 갖춘 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3.1 시행역량 보장

##### 3.1.1 인력, 시설 및 자금

회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행 과정에 부합하는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 시설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상기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래 수익 및 비용을 예측 및 관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개발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제반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 a. 규모 및 필요에 맞는 적절한 자원 제공
- b. 회사의 모든 경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수행 역량 확인 수

- 행 및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
- c.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규정 확립
- d. 전문가로부터 각종 조언 및 의견을 얻기 위한 규정 확립
- e.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및 실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규정 운용 체계 확립

### 3.1.2 통합

회사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회사에서 시행 중인 경영 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회사의 주요 목표 및 우선 순위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 a.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상의 목표 및 우선 순위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
- b.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회사 경영 관리 시스템은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 3.1.3 주요책임 및 요구사항

사내 모든 당사자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발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되고 있는 동시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기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내 전통이 뿌리깊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다음 제반 사항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

- a. 안전보건 및 조치를 취할 권한과 관련된 주요 책임 및 요구 사항을 확인, 지정, 기록 및 전달하고, 모든 경영 관리 담당자, 근로자, 계약업체, 하청업체 및 방문객에게 제반 보고 관련 사항을 설명함
- b.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책임 및 요구 사항 관련 변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전달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 수립·운영
- c. 잘못된 조건 혹은 기타 사고 발생 시 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기반 구축

회사 이사회의 안전보건경영 업무 관련 주요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시행되어 회사의 각 업무 수행 활동 및 장소에 그 결과가 적절하도록 보장하는 것
- b. 근로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발 및 시행 과정에 필요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

### 3.1.4 협의, 동기 부여 및 인식 수준 제고

회사 이사회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개발, 시행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여타 관련 당사자와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안전보건경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근로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HSMS)의 주요 목표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 시간 중 근로자에 피해 또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인체 공학적, 방사능, 생물학 및 정신적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위험성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인식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5. 교육 훈련 및 직무 수행 역량 강화

직무 수행 과정상 HSMS를 효과적으로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직무 수행 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 훈련은 보건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직무 수행 역량을 보증해 주는 장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역량 강화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개발·운용해야 한다.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안전 기준은 다음 제반 과정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a. 가용 직무 수행 역량 강화 기준 적용
- b. 직무 기술서 내용 점검
- c. 조사 및 감사 결과 분석
- d. 사고 보고서 재검토

직무 기술서 내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무 수행 역량 평가 과정 후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교육 진행 절차를 기록하고, 교육 효과에 대해 평가한 다음, 그 내용을 공포한다. 직무 역량 강화 활동은 승인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선발, 직무 평가 및 교육 훈련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내 업무 수행 활동과 상호 긴밀히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3.2. 지원 활동

### 3.2.1. 의사 전달 체계

효과적 의사 전달 및 정기 보고라는 2가지 직접적 수단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회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를 수용



하고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전달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보건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사내 모든 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업무 처리 절차 결정 시에는 다음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한다:

- a. 회사 성과 달성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경영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감사 및 경영진 검토 결과 전달
- b. 회사 외부 출처를 통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보 확인 및 수용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진행
- c. 상기 관련 정보가 회사 외부 이해 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

### 3.2.2. 보고

지속적 HSMS 모니터링 및 성장·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적시 보고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부 보고 절차에는 다음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 우발적 사고 발생 보고
- b. 적합성 보고
- c.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
- d. 제반 위험 요소 확인 보고

이와 관련된 외부 보고 절차에는 다음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 규정 제정 이후 의무 이행 사항 보고
- b. 투자자에 대한 보고

### 3.2.3. 문서화

문서화 과정은 전체 경영 관리 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바, 만일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회사 업무 처리 절차 및 프로세스를 확립한 후, 그 세부 내용을 기록 및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회사는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문서를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 과정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식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문서화 과정의 질적 수준은 회사 업무 수행 활동의 복잡성에 의해 결정된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상의 구성 요소가 회사 경영 관리 시스템과 상호 통합되

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 과정보다 이용 가능한 모든 문서화 시스템과 상호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는 다음 제반 목적에 부합하는 그룹, 요약 및 문서화 체제를 정비 및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a. 안전보건경영 정책, 목표 및 목적의 체계적 통합
- b. 안전보건경영 목표 및 목적 달성 수단 설명
- c. 주요 직무 기능, 책임 및 업무 처리 절차 기록
- d. 관련 문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회사 경영 관리 시스템상의 여타 구성 요소 설명
- e. 회사 측에서 시행하기 적합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구성 요소 제시

#### 3.2.4. 문서 통제

회사는 다음 제반 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 a. 회사의 책임 사항 및 직무 기술 내용에 따라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확인할 수 있을 것
- b. 정기적으로 문서를 재검토한 후, 필요 시 이를 적절히 수정할 것
- c. 문서 발행 시 사전에 먼저 책임 당사자와의 합의 과정을 거칠 것
- d. 필요로 하는 작업장에 가장 최신 문서가 비치·활용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할 것
- e.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정리할 것
- f. 모든 문서를 찾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둘 것

#### 3.2.5. 기록 및 정보 관리

기록은 회사에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서, 여기에는 다음 제반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 a.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조건 규정과 내부 또는 성과 지표
- b. 작업 허가 내용
- c. 기계 작동 조건, 작업용 장비 및 기타, 자재 등, 작업 환경, 주요 특성, 작동 방법 및 생산 공정 등을 포함하는 주요 위험 및 위험 요소
- d. 보건안전 관련 교육
- e. 검사, 보정 및 유지 관리
- f. 데이터 모니터링
- g. 사고 내역, 민원 제기 및 후속 관리 내용
- h.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관련 정보



i.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감사 및 재검토 내용

3.3. 위험 요소 확인, 평가 및 위험 통제

작업 과정 중 초래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 관련 변수에 근거하여 위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한 다음, 이 위험 수준을 줄이기 위한 통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3.1. 위험 요소 확인

위험 요소 확인 작업은 다음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 a. 잠재적 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제반 조건 및 업무 수행 활동 영역
- b. 작업 과정 중 초래될 수 있는 제반 사고 및 질병 유형

3.3.2. 위험 평가  
위험 평가 과정은 작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고 또는 질병 관련 위험 수준에 대해 통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3.3.3. 통제 조치

회사는 작업 과정 중 매우 높은 수준의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수행 영역, 자재,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어야 하는 바, 이는 각종 자재, 서비스 및 제품 관련 업무 수행 활동을 조정 및 통제하기 위한 직무 절차 및 지침과, 산업 및 자재 관련 계획,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표준 정책 기록 및 수행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작업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위험 통제 과정은 다음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 a. 주요 기술적 통제 (변경) 장치: 제거, 교체, 격리, 환기, 위생 관리 및 위생 설비
- b. 교육 훈련
- c. 보너스 제도, 인센티브, 보상 및 자기 동기부여 방법 등을 포함한 인식 수준 제고 및 동기 부여 개발
- d. 내부 감사, 사고 조사 및 병인학을 통한 평가
- e. 법률 집행

3.3.4. 설계 및 변경

설계 및 계획 수립 단계 이후에는 사고 및 질병 관련 위험 통제 절차상의 변경 절차를 시작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 검증, 재검토, 유효성 확인 및 적응 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설계 순환 주기상의 업무 처리 단계가 위험 요소 확인, 평가 절차 및 사고 및 질병 관련

위험 통제 과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 3.3.5. 행정상의 통제

업무 처리 절차 및 지침이 기록된 후, 공식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상의 모든 측면에서 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 처리 절차 설계 및 검토 과정은 담당 운영자를 포함하여 오직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원에게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인원이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 업무 처리 절차는 정기적으로, 특히 관련 장비나 자재가 변경된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3.3.6. 계약 내용 검토

사전 확정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조건에 대한 회사측 수행 역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한 자재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3.3.7. 조달

자재 및 서비스 유지 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자재 및 서비스 조달 시스템은 사고 및 질병 관련 위험 예방 전략과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하며, 이 조달 시스템은 또한 회사의 자재, 서비스, 제품 및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업무에 필요한 적정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자재 및 서비스가 작업장 내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회사는 이를 사용하게 될 모든 당사자에게 사고 및 질병 확인, 평가 및 위험 통제 방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3.3.8. 비상 또는 재난 대응 절차

회사는 비상 또는 재난 대응 절차를 수립 · 운용하는 동시에,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 정기적 시험 절차는 상당 수준의 위험 요소가 내재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원에게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과의 상호 공조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 3.3.9. 우발적 사고 대응 절차



회사는 우발적 사고 발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다음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a. 의무 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적정 수준의 응급 치료 시설 제공.
- b. 사후 관리 프로세스 진행

#### 3.3.10. 비상 복구 계획 관련 업무 처리 절차

회사는 비상 사태 발생 시 이를 정상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비상 복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동시에, 부상 근로자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 IV. 측정 및 평가

회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운영 과정을 측정,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그 성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개선 조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4.1. 검사 및 시험

회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목표 및 목적과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절차를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그 검사 및 시험 주기는 관련 목적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기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제반 사항이 포함된다:

- a. 참여 인원이 충분한 경험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
- b.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자료를 작성·보관하는 동시에, 경영진, 근로자 및 고용 계약업체가 이를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을 것
- c.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기준이 적의 준수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정 장비 및 시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 것
- d.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과정 중 보건안전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결함 사항 발견 시 즉각적 시행 조치를 이행할 것
- e. 사고 발생과 관련된 주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작업을 실시할 것
- f. 결과 및 검토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할 것

#### 4.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감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운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감사 업무를 실시해야 하는 바, 이 감사 업무는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원에 의해 사전 지정된 방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감사 주기는 작업장내 위험 요소 관련 증거 자료와 종전



감사 수행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회사 이사회는 경영진 검토 과정 진행 시 이 감사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 4.3. 시정 및 예방 조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및 검토 과정을 통해 수집된 모든 결과는 개선 및 예방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문서화) 및 활용되어야 하며, 회사 경영진은 그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야 한다.

### V. 경영진의 검토 및 지속적 개선 노력

회사 이사회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의 지속적 현실 적응 및 유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검토 과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포함하는, 모든 업무 수행 활동, 자재, 서비스 및 제품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검토 내용에는 다음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시행 과정에 대한 평가
- b.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목표, 목적 및 주요 과업
- c.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결과
- d.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효과와 다음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
  - 1) 규정 변경
  - 2) 시장 및 관계 기관 요구 사항
  - 3) 제품 및 관련 업무 변경
  - 4) 회사 조직 구조 변경
  - 5) 전염병학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개발
  - 6) 보건안전 관련 사고 발생 경험
  - 7) 보고 사항
  - 8) 특히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피드백 정보

1996년 12월 12일 : 자카르타에서  
인력부 장관 Drs. Abdul Latief에 의해  
공식 제정 시행됨

## 부록 II :

인력부 시행령

공포 번호 : 제PER-05/MEN/1996호

공포일: 96.12.1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감사 업무에 관한 실무 지침

### I. 적극적 실천 의지 확립 및 유지 관리

#### 1.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 1.1.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목적과, 그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회사의 적극적 실천 의지에 관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공포된 서면상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 1.1.2. 이 정책에는 기업가 및/또는 회사 이사회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1.3. 기업가 또는 회사 이사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 현행 정책 내용을 작성해야 함
- 1.1.4. 회사는 적정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해 모든 근로자, 방문객, 계약업체, 고객 및 공급업체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내용을 전달해야 함
- 1.1.5.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상의 특별 문제에 대해 특별 정책을 수립·운용할 수 있음.
- 1.1.6. 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및 특별 정책은 규정 변경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1.2. 시행 책임 및 권한

- 1.2.1. 사내 모든 관계자에 대해 결정 사항 보고 및 시행 책임 및 권한 당사자를 통지하고 기록함
- 1.2.2.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업무 책임자를 임명함
- 1.2.3. 특정 부서 팀장은 자신의 부서 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업무를 책임져야 함
- 1.2.4. 회사는 사내외 전문가를 통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업무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1.2.5. 비상 사태 발생 시 그 대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는 관련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ID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1.2.6. 회사 연례 보고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성격의 여타 보고서에는 안전보건경영 시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함

- 1.2.7. 특정 부서 팀장에 대해서는 작업장 내 출입하는 하청 근로자 및 여타 당사자와 관련된 본인 자신의 책임 사항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
- 1.2.8. 공식 법률로 제정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규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에 배포해 주어야 함
- 1.2.9. 이사회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이 적의 준수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함

### 1.3. 검토 및 평가

- 1.3.1. 이사회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한 후, 그 적합성 및 유효성에 대해 평가해야 함
- 1.3.2. 가능하면, 이 검토 결과를 경영진의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 제출해야 함
- 1.3.3. 이 검토 결과는 또한 문서 형태로 기록 및 정리되어 있어야 함

### 1.4. 근로자 참여 및 협의

- 1.4.1. 근로자 참여 및 회사 대표와의 협의 일정은 문서 형태로 기록·정리되어 있어야 함
- 1.4.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용함
- 1.4.3. 회사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지원 위원회(P2H&S)를 구성해야 함
- 1.4.4. 산업안전보건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 또는 최고 책임자가 담당함
- 1.4.5. 산업안전보건 간사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전문가이어야 함
- 1.4.6. P2H&S는 정책 개발 및 위험 통제 절차 확립에 업무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야 함
- 1.4.7. P2H&S는 정기 모임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 결과를 작업장내 공지해야 함.
- 1.4.8. P2H&S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업무 수행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1.4.9.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책임을 담당하도록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훈련 과정을 진행해야 함
- 1.4.10. 실무 그룹이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그 구성 조직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



## II. 문서화 전략

### 2.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전략 수립

- 2.1.1. 동 업무 담당 책임자는 업무 수행 과정과 관련된 보건안전상의 위험 요소와 위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해야 함
- 2.1.2. 업무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확인된 위험 발생 가능성, 보건안전상의 위험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2.1.3.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 공정, 프로젝트 또는 작업장과 관련된 특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2.1.4. 이 계획은 위험 및 사고 발생 가능성과 과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기록에 근거하고 있어야 함
- 2.1.5. 이 계획은 측정 가능하며,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 있는 동시에, 자원이 제공되고 있는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목적에 의해 결정됨

### 2.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매뉴얼

- 2.2.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매뉴얼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목적, 계획 및 업무 처리 절차를 포함하는, 회사 모든 단위에 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책임 범위를 확립시켜 주기 위한 것임
- 2.2.2.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 공정 또는 작업장과 관련된 특별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음.
- 2.2.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매뉴얼은 회사의 모든 당사자가 찾기 쉬운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함

### 2.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보 보급

- 2.3.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활동 및 문제점에 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포되어야 함
- 2.3.2. 따라서, 보건안전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하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 및 여타 방문객에게 이를 제공해 주어야 함.

## III. 설계 및 계약 내용 검토

### 3.1. 설계 통제

- 3.1.1. 문서화된 업무 처리 절차에는 설계 및 재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위험 요소 확인 및 위험 평가 과정이 고려되어 있어야 함
- 3.1.2. 제품 사용, 생산 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지침은 설계 단계 진행 시 작성하게 됨



- 3.1.3. 동 업무 책임자는 설계 과정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함
- 3.1.4.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업무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및 설계 수정 사항은 공식 시행 전 적정 권한 보유자에 의해 확인, 문서화, 검토 및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함.

### 3.2. 계약 내용 검토

- 3.2.1. 문서화된 업무 처리 절차는 근로자, 환경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보건안전상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 업무 처리 절차는 특정 계약 내용상의 자재 및 서비스 공급 과정에 적용하게 됨
- 3.2.2. 위험 요소 확인 및 위험 평가 작업은 적정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 계약 검토 단계에서 수행됨
- 3.2.3. 계약 내용 검토 과정은 고객에 대한 공급업체의 보건안전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 3.2.4. 계약 검토 내용은 문서 형태로 기록 및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함

## IV. 문서 통제

### 4.1. 문서 합의 및 공개

- 4.1.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문서에는 현재 진행 상태, 적정 권한 부여 현황, 발생일 및 수정일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함
- 4.1.2. 배포 문서에는 접수 당사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4.1.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문서는 최신판 자료를 특정 장소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관·관리해야 함
- 4.1.4.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모든 문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각 정리하는 동시에, 특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관련 내용을 별도 표시해 두어야 함

### 4.2. 문서 변경 및 수정

- 4.2.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문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업무 처리 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음
- 4.2.2. 관련 문서 또는 그 부록에는 가능하면 변경 사유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4.2.3.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모든 문서 상태에 대해 기록한 전체 문서 통제 목록 또는 문서 관리 절차를 수립·운용할 수 있음

## V. 조달

### 5.1. 자재 및 서비스 조달 업무 관련 기준

- 5.1.1. 문서화된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해 특정 물품 조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건 안전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 사양 및 여타 정보를 점검·및 확인할 수 있음
- 5.1.2. 모든 생산 시설, 화학 원료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달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표준 및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명세서 내용에 따라 수립·운용되어야 함
- 5.1.3. 보건안전 관련 요구 사항이 조달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동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될 잠재적 근로자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5.1.4. 구매 결정 전에는 그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교육 훈련 과정, 개인 보호 장비 공급 및 업무 처리 절차상의 변경 내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생산 시설 및 화학 원료 구매 및 사용 전에도 그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야 함

### 5.2. 자재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검증 시스템

- 5.2.1. 조달 완료된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개조 및 구매 명세서 내용에 따라 점검·확인 작업을 수행해야 함

### 5.3. 고객이 제공하는 재료 및 서비스 통제

- 5.3.1. 고객에 의해 공급되는 재료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위험 요소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업무 처리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함
- 5.3.2. 고객 현장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VI.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기초한 안전 관리 체제

### 6.1. 작업 수행 체계

- 6.1.1. 동 업무 담당 책임자는 관련 작업 수행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확인하고 제반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해야 함
- 6.1.2. 만일 위험 통제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제 수준에 따라 활동을 결정해야 함.
- 6.1.3.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문서화할 수 있음
- 6.1.4. 사전 확인 과정을 거친 모든 위험 요소를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한 작업 수행 지침 또는 업무 처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6.1.5. 회사에서 특정 업무 처리 절차 또는 작업 수행 지침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

- 개발할 때는 관련 규정, 표준 및 운영 지침 적용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6.1.6. 업무 처리 절차 및 지침은 관련 근로자의 조언을 참고하여 동 업무 담당 책임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적정 권한 보유에 의해 공식 승인된 직무 및 절차를 준수·이행해야 함
  - 6.1.7.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바, 이 장비는 항상 정확하게 사용하고, 적절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함
  - 6.1.8. 기 사용된 개인 보호 장비는 관련 규정 및/또는 업무 표준에 따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야 함
  - 6.1.9. 업무 처리 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 통제 활동을 점검·확인해야 함

## 6.2. 모니터링

- 6.2.1. 모니터링 활동은 사전 확정된 업무 처리 지침 및 절차가 적의 준수 이행되는 동시에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6.2.2. 모든 작업자는 본인 자신의 직무 수행 역량과 직무상의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6.2.3. 감독 책임자는 제반 위험 요소 확인 및 통제 과정에 참여해야 함
- 6.2.4. 감독 책임자는 질병 및 사고 보고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후, 자신의 제안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이사회 앞으로 제출해야 함
- 6.2.5. 감독 책임자는 또한 상담 과정에 참여해야 함

## 6.3. 근로자 선발 및 배치

- 6.3.1. 근로자 선발 및 배치 과정에 사용되고 확인되는 건강 관련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요구 사항
- 6.3.2. 담당 업무는 각 근로자별 직무 수행 역량 및 기술 수준에 근거하여 배정되어야 함

## 6.4. 작업 환경

- 6.4.1. 회사는 작업 환경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여 출입 제한 구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6.4.2. 출입 제한 구역에는 일정한 통제 장치가 설정·운영되고 있어야 함
- 6.4.3. 작업장 내 이용 가능 시설 및 서비스는 관련 표준 및 기술 지침에 부합하고 있어야 함
- 6.4.4. 안전 경고 신호와 비상구 표시는 관련 표준 및 기술 지침에 따라 게시 및 부착





되어 있어야 함

#### 6.5. 생산 유지 보수, 개선 및 변경

- 6.5.1. 안전 장비 검사를 포함하는 생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유지 보수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표준 및 기술 지침에 의한 세부 요구 사항을 수립·운영함
- 6.5.2. 모든 기록에는 작업장 내 조사, 유지 보수, 개선 및 변경 관련 내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록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 및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함
- 6.5.3. 등록 대상 생산 시설에는 유효하게 발급된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
- 6.5.4. 모든 변경, 개선 및 유지 보수 활동은 적정 자격을 갖춘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6.5.5. 생산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야 함
- 6.5.6. 수리할 필요가 있는 안전 장비는, 관련 규정을 포함한 유지 보수 요청 절차에 따라 별도 등록·관리되고 있어야 함
- 6.5.7. 불안정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수립·운용되고 있어야 함
- 6.5.8.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전에 설비가 작동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잠금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6.5.9. 생산 장비가 안전한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작동 상태 표시 절차가 수립·운용되고 있어야 함

#### 6.6. 서비스

- 6.6.1. 회사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기준 및 규약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정 서비스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6.6.2. 특정 계약에 의거 회사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동 서비스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기준 및 규약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회사는 동 서비스 이행 과정이 적정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 6.7. 비상 대응 조치 이행

- 6.7.1. (작업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상 사태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함
- 6.7.2. 이 비상 대응 절차는 적정 책임 당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험 및 검토되고



있어야 함

- 6.7.3. 근로자에게 관련 위험 수준에 따른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과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함
- 6.7.4. 비상 사태에 대한 특별 책임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특별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함
- 6.7.5. 비상 대응 지침 및 상호 관련성 여부를 모든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제시 및 주지시켜 주어야 함
- 6.7.6. 비상 신호 체계 및 장비는 정기적으로 시험, 검사 및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함
- 6.7.7. 적정 책임 당사자에 의해 비상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인체 공학적 접근 경로 및 배치 상태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실시되어야 함

#### 6.8. 응급 치료

- 6.8.1. 회사는 응급 치료 장비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응급 치료 시스템이 적정 표준 및 기술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야 함
- 6.8.2. 응급 치료 담당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된 후, 적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함

### VII. 모니터링 기준

#### 7.1. 제반 위험 요소 검사

- 7.1.1. 작업장 및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검사 작업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7.1.2. 이 검사 작업은 이사회 대표와 위험 발생 가능성 확인 과정에 대해 교육 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함
- 7.1.3. 이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의 확인을 통한 추가 반영 내용을 수집할 수 있음
- 7.1.4. 검사 작업 수행 시에는 작업장에 대한 점검 확인표 작성을 요청해야 함
- 7.1.5. 필요 시 P2H&S 및 회사 이사회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7.1.6. 시행 조치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그 효과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함

#### 7.2. 작업 환경 모니터링

- 7.2.1. 작업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동시에, 이를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 함
- 7.2.2. 작업 환경 모니터링 과정에는 물리, 화학, 생물학, 방사능 및 정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7.3. 검사, 측정 및 시험 장비

7.3.1. 보건안전 관련 검사, 측정 및 시험 장비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 보정, 유지 보수 및 보관하기 위한 문서화된 체계가 수립·운영되고 있어야 함

7.3.2. 이 장비는 적정 책임 당사자에 의해 보정 및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함

### 7.4. 건강 상태 모니터링

7.4.1. 잠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해야 함

7.4.2. 회사는 건강 진단이 요구되는 작업 조건에 대해 확인한 후, 이 진단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

7.4.3. 건강 진단 작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 지정된 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7.4.4. 회사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장 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7.4.5.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수행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

## VIII. 보고 및 개선

### 8.1. 비상 사태 보고

8.1.1.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보고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보건안전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주지시켜야 함

### 8.2. 우발적 사고 발생 보고

8.2.1. 작업장 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이를 보고토록 조치할 수 있는 문서화된 업무 처리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어야 함

8.2.2. 업무상사고 및 질병은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보고되어야 함

### 8.3. 업무상 사고 조사

8.3.1. 회사는 기 보고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조사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어야 함

8.3.2. 업무상 사고 예방 및 조사 작업은 동 업무 책임 당사자나 또는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8.3.3. 조사 보고서에는 각종 제안 사항과 개선 활동에 대한 추진 일정 계획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

8.3.4. 임명된 업무 책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업무 개선 활동 수행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야 함

8.3.5. 개선 활동은 사고 현장 내 근로자와의 상호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8.3.6. 이 과정에서 개선 활동 효과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8.4. 관련 문제점에 대한 책임 이행

8.4.1.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문제를 책임 이행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수립·운용되고 있어야 함

8.4.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책임 이행 및 그 후속 관리 절차를 주지시켜야 함

### IX. 자재 관리 및 처리 규정

#### 9.1. 수동 및 기계적 처리

9.1.1. 수동 및 기계적 처리 과정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있어야 함

9.1.2. 확인 및 평가 작업은 동 업무 담당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9.1.3. 회사는 수동 및 기계적 처리 과정과 관련된 제반 위험 요소 통제 방법을 시행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해야 함

9.1.4. 각종 피해, 유출 및 누출 사고 예방법을 포함하는 자재 관련 책임 이행 절차가 수립·운용되고 있어야 함

#### 9.2. 교체, 보관 및 처분 시스템

9.2.1. 사용 자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수립·운용되고 있어야 함

9.2.2. 이 업무 처리 절차에는 취약하거나 시효가 만료된 자재 통제 업무와 관련된 사전 요구 조건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9.2.3.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 자재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해야 함.

#### 9.3. 위험물

9.3.1. 회사는 관련 규정상의 전제 기준, 업무 표준 및 기술 지침에 따라 위험물을 보관, 처리 및 제거하기 위한 문서화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있어야 함

- 9.3.2. 위험물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표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함.
- 9.3.3. 위험물을 식별 분류하여, 그와 관련된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수립·운영되고 있어야 함
- 9.3.4. 위험 안내 신호가 관련 규정 및 업무 표준에 따라 게시 및 부착되어 있어야 함
- 9.3.5. 위험물에 대한 안전 취급 관련 업무 처리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9.3.6. 위험물 취급 업무 담당 책임자는 안전한 위험물 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 받은 상태이어야 함

## X.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10.1. 보건안전 관련 기록

- 10.1.1. 회사는 보건안전 관련 기록을 확인, 수집, 작성, 유지 관리 및 보관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어야 함
- 10.1.2. 관련 법규, 표준 및 기술 지침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비치·관리되고 있어야 함
- 10.1.3. 관련 분류 기록의 유지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존재해야 함
- 10.1.4. 조사 및 검토 관련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함
- 10.1.5. 업무상 사고에 따른 보상과 건강 재활 관련 기록이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함

### 10.2. 보건안전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 10.2.1. 보건안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수집한 후, 그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함
- 10.2.2. 보건안전 관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사내에 배포하고 있어야 함

## XI.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감사

### XII. 11.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 정보 감사

- 11.1.1. 사전 일정 계획이 수립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 감사는 계획 수립 활동의 진행 과정을 조사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임
- 11.1.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내부 감사 업무는 사내 적정 자격을 갖춘 독립적 업무 담당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11.1.3. 경영진 및 기타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들에게 감사 보고서를 배포해 주어야 함.

- 11.1.4. 감사 수행 당시 발견된 불비 사항은 개선 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상시적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해야 함

### XIII. 전문 기술 및 역량 개발

#### XIV. 안전보건 교육

##### 12.1. 교육 훈련 전략

- 12.1.1. 안전보건 관련 사전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훈련 수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12.1.2. 안전보건 관련 교육 훈련 계획을 사내 모든 단위에서 수립·운영토록 지시해야 함
- 12.1.3. 교육 훈련 과정에는 직무 수행 역량과 교육 배경간의 상호 차이점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야 함
- 12.1.4. 교육 훈련 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공인 당사자나 또는 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함
- 12.1.5. 효과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적정 시설 및 자원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12.1.6. 회사는 관련 서류를 작성·활용하는 동시에,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 12.1.7.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평가 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평가 작업을 실시해야 함
- 12.1.8.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그 합목적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12.2. 경영자 및 감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12.2.1.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행 업무와 관련된 법률 준수 의무 및 원칙 설명 과정을 포함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12.2.2. 관리자 및 감독자에게 자신의 역할 및 책임 영역에 관한 적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12.3.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 12.3.1. 신입 및 전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직무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12.3.2. 작업장 내 생산 시설이나 공정상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12.3.3.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재충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

#### 12.4. 방문객 및 계약업체에 대한 입문용 교육 실시

12.4.1. 회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책 및 업무 처리 절차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입문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12.4.2. 방문객 및 업무상 파트너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사전 규정되어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어야 함

#### 12.5. 전문 기술 교육

12.5.1. 회사는 특수 직무, 일상 작업 또는 장비 운영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인허가 및 자격 부여 요건을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야 함

1996년 12월 12일 : 자카르타에서  
인력부 장관 Drs. Abdul Latief에 의해  
공식 제정 시행됨



【붙임 7】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시 보상기준비용

(장애급여표, PER04/MEN/1993)

| 아래 부위에 있어서의 영구장애                 | 비율(%) X 월급 | 아래 부위에 있어서의 영구장애 | 비율(%) X 월급 |
|----------------------------------|------------|------------------|------------|
| 어깨관절 아래부분의 오른팔                   | 40         | 오른손 엄지손가락        | 15         |
| 어깨관절 아래부분의 왼팔                    | 35         | 왼손 엄지손가락         | 12         |
| 팔꿈치관절 아래부분의 오른팔                  | 35         | 오른손 집게손가락        | 9          |
| 팔꿈치관절 아래부분의 왼팔                   | 30         | 왼손 집게손가락         | 7          |
| 손목 아래부분의 오른손                     | 32         | 오른손의 다른 손가락      | 4          |
| 손목 아래부분의 왼손                      | 28         | 왼손의 다른 손가락       | 3          |
| 둔부 아래부분의 양쪽다리 모두                 | 70         | 오른손 집게손가락 첫마디    | 4.5        |
| 둔부 아래부분의 한쪽다리                    | 35         | 왼손 집게손가락 첫마디     | 3.5        |
| 발목 아래의 양쪽 다리 모두                  | 50         | 오른손 다른 손가락 첫마디   | 2          |
| 발목 아래의 한쪽 다리                     | 25         | 왼손 기타 손가락 첫마디    | 1.5        |
| 양쪽 눈                             | 70         | 한쪽 발 엄지발가락       | 5          |
| 한쪽 눈 혹은 가까운 거리(사물을 보는데 있어서의) 복시증 | 35         | 한쪽 발 집게발가락       | 3          |
| 양쪽 귀의 청력                         | 40         | 기타 발가락 중 한개      | 2          |
| 한쪽 귀의 청력                         | 20         |                  |            |

| 기타 장애                                | 비율(%) X 월급 |
|--------------------------------------|------------|
| 두피가 벗겨짐                              | 10~30      |
| 발기부전                                 | 30         |
| 한쪽 다리가 짧게 났을때                        |            |
| 5cm 이하                               | 10         |
| 5-7.5cm                              | 20         |
| 7.5cm이상                              | 30         |
| 양쪽 귀 청력기능저하(매 10데시벨 당)               | 6          |
| 한쪽 귀 청력기능저하(매 10데시벨 당)               | 3          |
| 한쪽 귀 귓바퀴(귓불) 상실                      | 5          |
| 양쪽 귀 귓바퀴(귓불) 상실                      | 10         |
| 콧구멍 주변 부위 상실                         | 30         |
| 코에 구멍이 남                             | 15         |
| 키스능력상실                               | 10         |
| 육체적인 노동능력 상실                         |            |
| 50~70%                               | 40         |
| 25~50%                               | 20         |
| 10~25%                               | 5          |
| 정상적인 사고기능 상실                         | 70         |
| 시력기능의 상실(매 10%상실당)                   | 7          |
| 양쪽 시력이 각각다를 때(3x가장 좋을 때 %)+ 가장나쁠 때 % | 7          |
| 색깔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을때                    | 10         |

**【붙임 8】**

**신 투자법 주요내용**

**【6조】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7조】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 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부여

**【8조】 과실 공금 이전의 자유보장**

-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 자본,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소득, 로열티, 투자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등을 외국화폐로서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2조】 투자 제한금지분야 및 업종**

-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으로 결정

**【14-17조】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

- 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경영의 원칙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투자 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원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18조】 조세 혜택**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하에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부여 산업)투자에 대한 일정기간, 일정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22조】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

- 토지경작권 :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 :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 사용권 : 최장 70년까지 가능

**【23조】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원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 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보구입국 사증 부여, 2년 이상 인니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25-26조】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 시스템 도입**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획득

**【27-28조】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

- 정부는 정부기관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간 투자 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원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32조】 외국 투자자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 외국인 투자제한 개정 내역

- 【1】 업종세부 : 요식업(식당, 여행사, 행사대행, 이벤트, 위락, 스포츠시설(골프장제외), 가라오케)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49~51%(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51%지분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야 함)
- 【2】 업종세부 : 영화 관련 서비스업(스튜디오, 필름 등)
  - 이전법 : 100% 국내자본
  - 개정법 : 지분보유 49%까지 허용
- 【3】 업종세부 : 갤러리, 예술극장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까지
  - 개정법 :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 【4】 업종세부 : 호텔(1~2성급)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까지
  - 개정법 : 지분보유 51%까지 허용-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 【5】 업종세부 : 게임서비스업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까지
  - 개정법 :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 【6】 업종세부 : 기타숙박업(모텔, 장)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까지
  - 개정법 : 지분보유 49~51%까지 허용-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순수자본은 49%까지 허용, 51%지분보유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파트너쉽 일 체결해야함
- 【7】 업종세부 : 여가 오락 스포츠업(골프장제외)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까지
  - 개정법 : 지분보유 49~51%까지 허용- 지역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순수자본은 49%까지 허용, 51%지분보유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파트너쉽 일 체결해야함
- 【8】 업종세부 : 홈스테이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0%까지

- 개정법 : 중소기업만 운영가능
- 【9】 업종세부 : 10MW이하 발전소
  - 이전법 : 중소기업만 가능
  - 개정법 :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가능
- 【10】 업종세부 : 10MW이상 발전소
  - 이전법 : 국내자본만 허용
  - 개정법 : 외국인 최대 지분 보유 95%까지 허용
- 【11】 업종세부 : IDR10억이상 공사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55%
  - 개정법 : 외국인 최대 지분보유 67%까지 허용
- 【12】 업종세부 : 병원업 병실 200개
  - 이전법 :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해 65%지분보유 가능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67%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가능
- 【13】 업종세부 : 병원장비(의료기자재 임대)
  - 이전법 : 지방수도(주도)에 한해 49%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49%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가능
- 【14】 업종세부 : 정신재활클리닉(특수 클리닉, 특수 치클리닉, 건강보조서비스)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65%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67%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가능
- 【15】 업종세부 : 간호/간병서비스
  - 이전법 : 메단과 수라비야에 한해 49%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49~51% 인도네시아 전 지역 49%(메단/수라비야 51%)
- 【16】 업종세부 : 병원운영업 및 건강증진 서비스(응급의료 및 피난)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65%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67%
- 【17】 업종세부 : 식용작물(옥수수, 콩, 땅콩, 커피콩, 쌀, 카사바, 고구마등)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95%
  - 개정법 : 특별면허 취득 및 농림부 장관의 추천서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지분보유 49%까지 허용
- 【18】 업종세부 : 수산물 제조/추출(양식,발효,추출,어묵류,냉동,냉장생산)
  - 이전법 : 중소기업에만 허용

- 개정법 :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시 허용
- 【19】 업종세부 : 자연관광 및 에코투어리즘(물, 자연체험, 동물관광 및 기타)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25%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51%
- 【20】 업종세부 : 통신망 운영 및 건설
  - 이전법 : 허가, 불허에 대한 언급없음
  - 개정법 : 100% 국내자본만 가능(외국인 불허)
- 【21】 업종세부 :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
  - 이전법 :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시 허용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49%
- 【22】 업종세부 : 공영라디오 및 텔레비전
  - 이전법 : 100% 국내 자본만 가능(외국인 불허)
  - 개정법 : 특별면허 및 허가 취득 시 허용
- 【23】 업종세부 : 해상화물 해외운송 및 취급, 해상해외여객 수송 서비스
  - 이전법 : 외국인 지분 49%
  - 개정법 : 외국인 지분보유 60%(아세안 회원국에 한함)
- 【24】 업종세부 : 인조 감미료
  - 이전법 : 투자불허
  - 개정법 : 식약청 특별허가 취득시 허용
- 【25】 업종세부 : 담배 재배 및 생산
  - 이전법 : 중소기업에만 허용
  - 개정법 :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시 허용

#### 투자진출 절차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 사업활동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PT : Perserp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가짐.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el Asing)이라 부르며 다른 국내기업(PMDN)과 다른 자격을 주고 있음.

| 현지 법인 설립 수속절차와 해당관청 |

| 절차           | 해당관청                          | 관련사항                                           |
|--------------|-------------------------------|------------------------------------------------|
| 외국인 투자승인     | 투자조정원(BKPM)<br>지방투자조정청(BKPMD) | 외국인 투자승인                                       |
| 소재지 증명서      | 관할지역 동사무소                     | 소재지 증명서 발급                                     |
| 회사설립 승인      | 법무부                           | 회사 정관의 승인, 관보, 공고                              |
| 세무등록번호       | 재무부 국세청<br>지방세무서              | 세무등록번호(NPWP) 발급, 달러 회계, 영문회계 승인, 부가가치세 과세업자 등록 |
| 자본금 입금       | 일반은행                          | 자본금 불입 신고                                      |
| 회사등록         | 지방 상업국                        | 회사등록(TDP)                                      |
| 사업허가서        | 투자 조정원                        | 영구 사업허가서 발급                                    |
| 취업규칙 등록      | 노동부                           | 취업규칙 등록                                        |
| 국가기관<br>개별허가 | 재무부<br>에너지광업부                 | 금융/보험부분의 경우<br>석유/천연가스의 경우                     |

상기자료는 모두 2011 주요국가 해외투자편람(KOTRA 자료 10-093)에서 발췌하여 기재한 것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2010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보고 서한



###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0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보고

---

수신 : 외교통상부장관(동남아과장)

사본 : 노동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 노동부장관(임금복지과장), 노동부장관(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주중국대사, 주호치민총영사

발신 : 주인도네시아대사

---

#### 1. 인니 최저임금제도 개요

- 최저임금은 주 단위 및 시·군 단위로 결정되므로 전국단위의 통일적인 최저임금은 없으며, 통계 목적을 위해 주별 최저임금을 평균하여 전국 최저임금 수준을 산출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 주지사가 결정하되, 최근 몇 년간 매년 10% 내외의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음
- 주와 시·군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임금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주지사에게 통보함
  - 주지사는 근로자 임금정책위원회와 지역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 및 시·군의 최저임금을 결정함.
- 주지사는 주 또는 시·군 단위의 최저임금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 2. 2010년 최저임금 수준

- 2010.1월 현재 총33개주중 32개주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전국평균 최저임금은 910,744루피아로 전년대비 8.22% 인상됨.
- 세계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임금인상을 다소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되어 특별한 파업이나 시위없이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거나 200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지역(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3. 2010년 주별(Province) 최저임금

| 번 호 | 주                | 최저임금             |                  | 인상율(%) |
|-----|------------------|------------------|------------------|--------|
|     |                  | 2009             | 2010             |        |
| 1   | NANGGROE ACEH D. | Rp. 1,200,000.00 | Rp. 1,300,000.00 | 8.33   |
| 2   | SUMUT            | Rp. 905,000.00   | Rp. 965,000.00   | 6.63   |
| 3   | SUMBER           | Rp. 880,000.00   | Rp. 940,000.00   | 6.82   |
| 4   | RIAU             | Rp. 901,600.00   | Rp. 1,016,000.00 | 12.69  |
| 5   | KEPULAUAN RIAU   | Rp. 892,000.00   | Rp. 925,000.00   | 3.70   |
| 6   | JAMBI            | Rp. 800,000.00   | Rp. 900,000.00   | 12.50  |
| 7   | SUMSEL           | Rp. 824,730.00   | Rp. 927,825.00   | 12.50  |
| 8   | BANGKA BELITUNG  | Rp. 850,000.00   | Rp. 910,000.00   | 7.06   |
| 9   | BENGKULU         | Rp. 735,000.00   | Rp. 780,000.00   | 6.12   |
| 10  | LAMPUNG          | Rp. 691,000.00   | Rp. 767,500.00   | 11.07  |
| 11  | JAWA BARAT       | Rp. 628,191.15   | Rp. 671,500.00   | 6.89   |
| 12  | DKI JAKARTA      | Rp. 1,069,865.00 | Rp. 1,118,009.00 | 4.50   |
| 13  | BANTEN           | Rp. 917,500.00   | Rp. 955,300.00   | 4.12   |
| 14  | JAWA TENGAH      | Rp. 575,000.00   | Rp. 660,000.00   | 14.78  |
| 15  | YOGYAKARTA       | Rp. 700,000.00   | Rp. 745,694.00   | 6.53   |
| 16  | JAWA TIMUR       | Rp. 570,000.00   | Rp. 630,000.00   | 10.53  |
| 17  | BALI             | Rp. 760,000.00   | Rp. 829,316.00   | 9.12   |
| 18  | N T B            | Rp. 832,500.00   | Rp. 890,775.00   | 7.00   |
| 19  | N T T            | Rp. 725,000.00   | Rp. 800,000.00   | 10.34  |
| 20  | KALBAR           | Rp. 705,000.00   | Rp. 741,000.00   | 5.11   |
| 21  | KALSEL           | Rp. 930,000.00   | Rp. 1,024,500.00 | 10.16  |
| 22  | KALTENG          | Rp. 873,089.00   | Rp. 986,500.00   | 12.99  |
| 23  | KALTIM           | Rp. 955,000.00   | Rp. 1,002,000.00 | 4.92   |
| 24  | MALUKU           | Rp. 775,000.00   | Rp. 840,000.00   | 8.39   |
| 25  | MALUKU UTARA     | Rp. 770,000.00   |                  |        |
| 26  | GORONTALO        | Rp. 675,000.00   | Rp. 710,000.00   | 5.19   |
| 27  | SULUT            | Rp. 929,500.00   | Rp. 1,000,000.00 | 7.58   |
| 28  | SULTRA           | Rp. 770,000.00   | Rp. 860,000.00   | 11.69  |
| 29  | SULTENG          | Rp. 720,000.00   | Rp. 777,500.00   | 7.99   |
| 30  | SULSEL           | Rp. 905,000.00   | Rp. 1,000,000.00 | 10.50  |
| 31  | SULBAR           | Rp. 909,400.00   | Rp. 944,200.00   | 3.83   |
| 32  | PAPUA            | Rp. 1,216,100.00 | Rp. 1,316,500.00 | 8.26   |
| 33  | PAPUA BARAT      | Rp. 1,180,000.00 | Rp. 1,210,000.00 | 2.54   |
|     | 평 균              | Rp. 841,529.55   | Rp. 910,744.34   | 8.22%  |

※ 1\$=9,290Rp(10.1.21일자 환율)

#### 4. 우리기업 밀집지역 최저임금

- 우리기업은 자카르타 인근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시·군지역에 다수 소재하고 공장부지·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방, 수까부미, 수라바야 등에도 진출하고 있음.
- 주별 최저임금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시·군별 최저임금을 정함.
-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등 다수의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시군의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함.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자원관련 산업), 외국기업이 다수 소재한 업종(수출봉제, 전자 등)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이 높음.





| 번 호 | 시 · 군(업종)            | 2010년 최저임금    |
|-----|----------------------|---------------|
| 1   | 반딤시(Kota Bantam)     | Rp. 1,110,000 |
| 2   | 반둥시(Kota Bandung)    | Rp. 1,118,000 |
| 3   | 반둥군(Kab. Bandung)    | Rp. 1,060,500 |
| 4   | 버까시시(UMKota Bekasi)  | Rp. 1,155,000 |
| 5   | 버까시시 금속, 기계 등        | Rp. 1,300,000 |
| 6   | 버까시시 전자, 수출봉제 등      | Rp. 1,257,000 |
| 7   | 버까시군(Kab. Bekasi)    | Rp. 1,168,974 |
| 8   | 버까시군 제1군 산업          | Rp. 1,285,871 |
| 9   | 버까시군 제2군 산업          | Rp. 1,250,802 |
| 10  | 보고르시(Kota Bogor)     | Rp. 971,200   |
| 11  | 보고르시 섬유, 봉제산업        | Rp. 836,650   |
| 12  | 보고르군(Kab. Bogor)     | Rp. 1,056,914 |
| 13  | 까라왕군(Kab. Karawang)  | Rp. 1,111,000 |
| 14  | 까라왕군 섬유, 봉제산업        | Rp. 1,111,000 |
| 15  | 수까부미시(Kota Sukabumi) | Rp. 850,000   |
| 16  | 수까부미군(Kab. Sukabumi) | Rp. 671,500   |
| 17  | 수까부미군 섬유, 봉제, 전자산업   | Rp. 675,000   |
| 18  | 수방군(Kab. Subang)     | Rp. 746,400   |
| 19  | 땅거랑시(Kota Tangerang) | Rp. 1,130,000 |
| 20  | 땅거랑군(Kab. Tangerang) | Rp. 1,125,000 |
| 21  | 찐레곤시(Kota Cilegon)   | Rp. 1,174,000 |
| 22  | 세랑군(Kab. Serang)     | Rp. 1,101,000 |
| 23  | 수라바야시(Kota Surabaya) | Rp. 1,031,500 |

/ 끝 /

## 주인도네시아대사

수신자 동남아과장, 노동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 노동부장관(임금복지과장), 노동부장관(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중국대사, 주호치민총영사



노무관 하형소 공사참사관 오송 공사 안명수 대사 01/21 김호영

협조자

시행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 (2010. 01. 21.) 접수 국제협력담당관-199 (2010. 01. 22.)  
사관-376

우 - Jl. Gatot Subroto KAV.57, Jakarta-Selatan, INDONESIA / http://idn.mofat.go.kr  
12950

전화 (62-21) 520-1915 전송 (62-21) 525-4159, / hsha08@mofat.go.kr / 비공개(2)  
4287

## 참고문헌

- 아시아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 체계 비교 연구(2007.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0 National Program and Profile on OSH in Indonesia
- Jamsosteck 2010 년보
- ILO Asian-Pacific Regional Network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Asia-OSH)
-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방향 / KOTRA (Global business Report-101, '11.04.05)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KOLIF) 국가별노동정보(2009.12.1)
-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가현황 및 진출현황(2008.12)
- KOTRA/지식경제부, 2011년도 주요국가 해외투자편람(2011.1)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KOLIF) 인도네시아 개황(2010.06.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2010)
-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 검토자

배계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

## 집필자

김동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김정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정지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 개도국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인도네시아편 -

2011년 11월 인쇄

2011년 12월 발행

발행인 : 백헌기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등록번호 : 2011-국제-1393(등록일:2011년 11월 28일)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TEL : (032) 510-0742~7

FAX : (032) 510-8482

당 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